

2024
개정판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 매뉴얼

요약편



CSES | 사회적 가치 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Copyright © 2024. CSES
All rights reserved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Contents

제1부 사회성과 측정개요	I. 사회성과 측정원칙과 범위	10
	1. 사회성과 측정원칙	10
	2. 사회성과 측정범위	12
	3. 사회성과 측정대상 (취약계층 범위)	16
	II. 사회성과 측정 프로세스	18
	1. 6단계 측정과정	18
	2. 사회성과의 4가지 영역	25
3. 성과 측정산식	30	

제2부 사회성과 유형별 측정방식	I. 제품/서비스성과	34
	1. 할인/무료 제공	35
	2.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36
	II. 내부공정성과	37
	1. 직접고용	38
	2. 경력성 일자리 (사회적기업 취업 후 이직 지원)	41
	3. 중증 돌봄 대체	42
	III. 외부공정성과	43
	1. 소농거래	44
	2. 공정무역 - 농산물	46
	3. 공정무역 - 비농산물	48
	4. 공정여행 - 해외, 국내	49
	5. 클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50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53
	7.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54
	8. 문화예술 자산보호	55
	9. 비영리 조직 지원	56
	10.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57
	11.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58
	IV. 환경성과	60
	1. 재사용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62
	2. 재제조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64
	3. 재활용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66
	4. 친환경 대체재료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68
	5. 친환경 프로세스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70
	6. 생태계 복원력 강화	72

부록	별첨	
	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2023년)	76
	2. Proxy DB 출처	85

제 1 부

사회성과 측정 개요

I. 사회성과 측정원칙과 범위

1. 사회성과 측정원칙
2. 사회성과 측정범위
3. 사회성과 측정대상 (취약계층 범위)

II. 사회성과 측정 프로세스

1. 6단계 측정과정
2. 사회성과의 4가지 영역
3. 성과 측정산식

I.

사회성과 측정원칙과 범위

1. 사회성과 측정원칙

1) 이해관계자 회계 원리

측정원칙: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

기업 활동이 각 이해관계자에게 발생시킨 편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사회성과를 측정

사회적기업의 입장에서 ‘사회’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집합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성과란 기업 활동이 각 이해관계자에게 발생시킨 편익과 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비용을 뺀 값과 동일하다. 이해관계자 회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관계자별로 계정(account)을 만든 후, 발생한 편익과 비용을 계정에 기입하고 이를 합산하여 사회성과를 측정한다. 측정과정에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표에 대한 이해와 합의과정을 반드시 포함한다.

2) 보수성의 원칙

측정원칙: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성과만을 인정

명확한 기준값^{proxy}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회성과로 인정하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사용

사회성과 측정은 일종의 사회적 회계로서 사회적가치의 과대 계상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에 서는 명확한 기준값^{proxy}이 있는 경우만 사회성과로 인정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성과가 있는 경우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최소 기준만을 적용한다. 최소기준이라 함은 ①타당하고(평균값 혹은 가장 보수적인 값) ② 신뢰성 있는(국가통계 등) 데이터를 의미한다. 기업과 측정 전문가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준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 전문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품/서비스의 혁신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는 사회문제와 그 목표집단과 관련된 사회성과만 인정하며, 일반적인 소비자 후생은 사회성과에서 배제한다. 단순히 제품/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었다고 해서 모든 거래에서의 가격인하분이 사회성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격장벽으로 인해 제품/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했던 목표집단(ex. 경제적 취약계층)과의 거래만이 사회성과로 인정된다. 또한 영리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의 외부 효과인 사회적 편익도 사회성과에서 배제한다.

3) 준거시장 기준의 원칙

측정원칙: 현실적인 시장가격^{baseline}을 추정하여 화폐가치로 환산

사회적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을 가진 준거시장에서의 가격을 추정

사회성가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화폐화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와 동일한 가치물(價値物)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그 시장가격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물이 없다면, 그 가격을 새롭게 추정해야 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표 1-1>와 같이 크게 가격에 기반한 추정방식과 비용에 기반한 추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시장가격이 존재한다면 즉각적인 가격비교를 통한 성과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생산 활동과 유사한 생산활동을 하는 실제 공급자들의 공급의사가격이나 구매자의 지불의사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조사는 조사표본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통계 데이터베이스 등 추정 값의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추정방식의 적용에 있어서도 적용순위를 두어 가장 타당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가격을 추정한다.

<표 1-1> 준거시장에 근거한 가격추정방식

구분	가격추정방식	내용	적용순위
가격 기반	일반시장가격 (average pr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서비스의 평균적인 시장가격 업계 평균가격, 법정 가격 등 공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 	1
	공급의사가격 (willingness to supp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우, 동종 업종의 공급자가 동일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고자 하는 가격 통상 기존의 수익률 또는 수익액이 보장되는 지점에서 공급의사가 발생한다고 간주함 해당 산업의 생산비, 수익률 등에 대한 국가/산업 단위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정 	2
	지불의사가격 (willingness to p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회문제의 당사자나 문제의 해결에 책임이 있는 잠재적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기존 솔루션의 사회문제 해결 단위당 소요 비용을 지불의사가격으로 간주 	3
비용 기반	대체방식 비용 (alternative co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없었을 경우, 기존의 솔루션에 사회가 지불했을 가격(비용) 	4
	추가투입비용 (additional cost as minimum pr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원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원가 투입분을 사회성가의 가격으로 간주 주요 서비스에 인적 서비스가 부가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 	제한적용

2. 사회성과 측정범위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측정원칙에 따라 사회성과의 측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특정한다.

- **사명부합성**

기업의 사회적 사명^{mission}과 핵심 비즈니스에 부합하는 사회성과

- **결과중심성**

조직 활동의 결과^{outcome}로서의 사회성과

- **미보상성**

가격기구와 제도를 통해 보상되지 않은 미(未)보상 사회성과

이는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원칙의 일반화 및 표준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성과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본 제도의 성과측정범위에서 제외될 뿐 사회적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님을 밝힌다.

1) 사명부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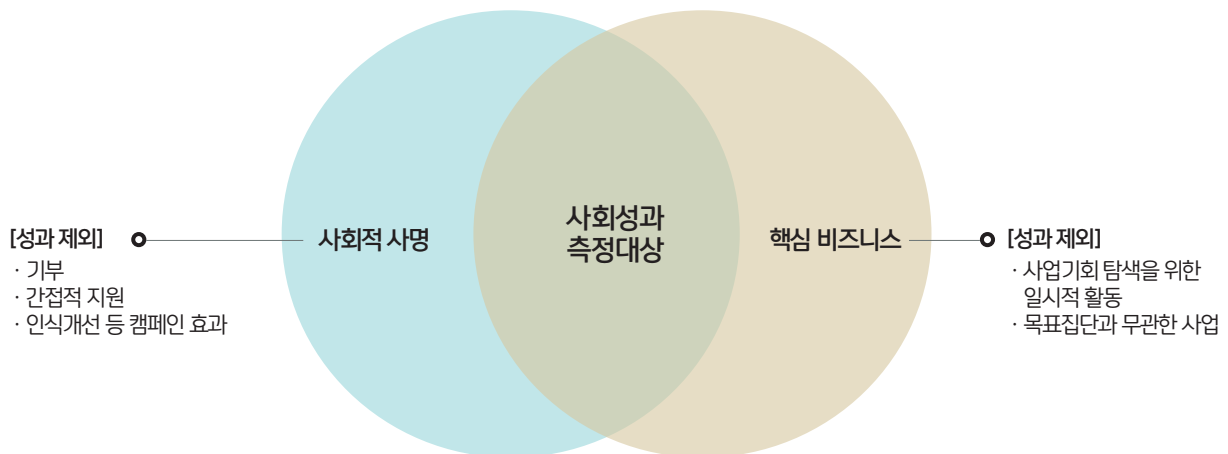
측정범위 : 기업의 사회적 사명^{mission}과 핵심 비즈니스와 관련된 직접적 사회성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사명과 핵심 비즈니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회성과만 측정하며, 부수적, 간접적 성과는 배제

원칙

사회적기업의 사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지표 위주로 측정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핵심 비즈니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한 성과만을 인정한다.

기업의 사회성과는 ① 사회적 사명에서 정의한 사회문제를 해결한 것이어야 하며, ② 목표집단 또한 사회적 사명에서 정의한 바와 동일해야 하고, ③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업종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사회문제 해결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1> 사회성과 측정대상

적용

기업의 사회적 사명^{mission}과 핵심 비즈니스는 주로 정관에 명시된 목적과 업종을 통해 확인한다.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창출된 성과는 부수적 성과로 보아 측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형식이 '정관'이 아니더라도 '인증받은 정기(임시, 주주)총회 이사록', '사명선언문', '비전선언문'과 같은 기업의 미션이 공식적인 목적으로서 명시된 문건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법인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문건의 내용으로 측정여부를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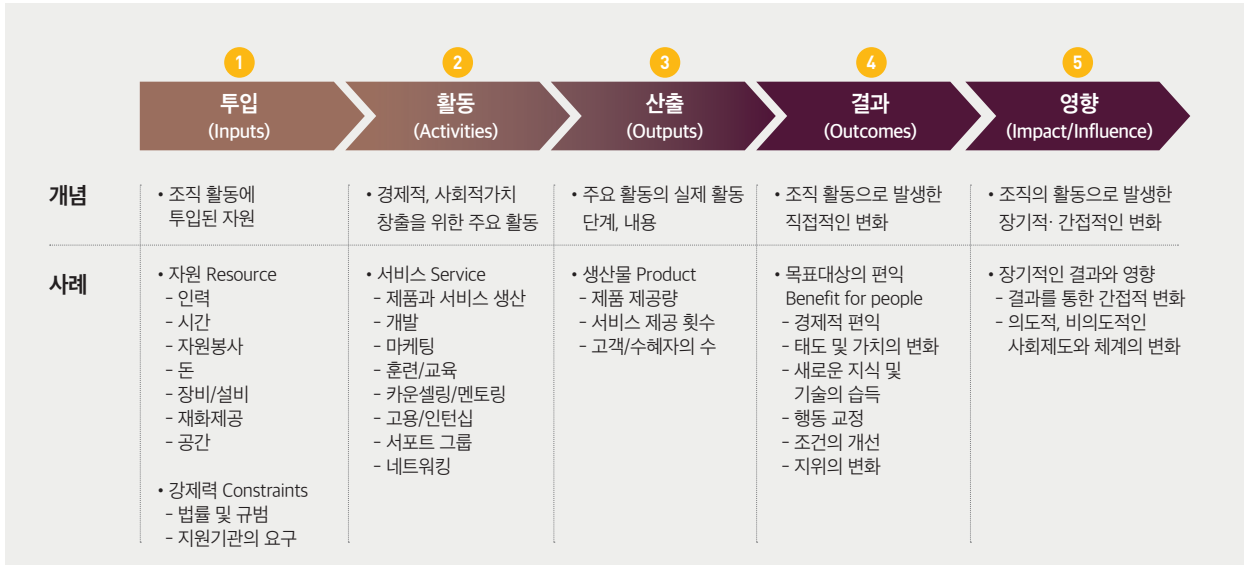
<표 1-2> 사회적 사명 및 핵심 비즈니스 부합성 판단에 따른 예외 사례

사회적기업 활동	내용	사업 부합성	비즈니스 부합성
사명과 무관한 단순 기부	핵심 미션과 상관없는 현금 또는 현물의 기부성과	×	×
보편적인 기업윤리를 따르는 기업 활동	기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업윤리 추구 활동의 성과	×	△
일시적인 부가사업이나 이벤트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관계가 적고 사업화되지 않은 일시적인 활동의 성과	△	×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선 사회공헌 활동	기업 조직 활동이 아닌 직원일부의 사회공헌 활동 또는 협회 차원의 활동성과	△	×

2) 결과중심성

측정범위 : 조직 활동의 결과^{outcome}로서의 사회성과

기업 활동을 통한 수혜자의 직접적인 변화를 사회성과로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outcome)만을 측정



<그림 1-2> 가치창출 과정의 논리모형

원칙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기업이 최종적으로 창출한 사회성과에 대한 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결과^{outcome}를 평가한다. 따라서 사회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과 추가적인 비용의 투입, 희생과 헌신, 경영혁신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는다. 사회성과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실제 변화, 즉 목표집단의 편익만을 측정대상으로 본다.

영향^{impact}은 중장기적인 결과로서 측정하기도 어렵고, 측정하더라도 기업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복잡하여 해당 기업의 기여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측정대상이 아니다.

적용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영향에 대한 측정은 배제하고 누구나 수용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과만을 측정대상으로 삼는다.

3) 미보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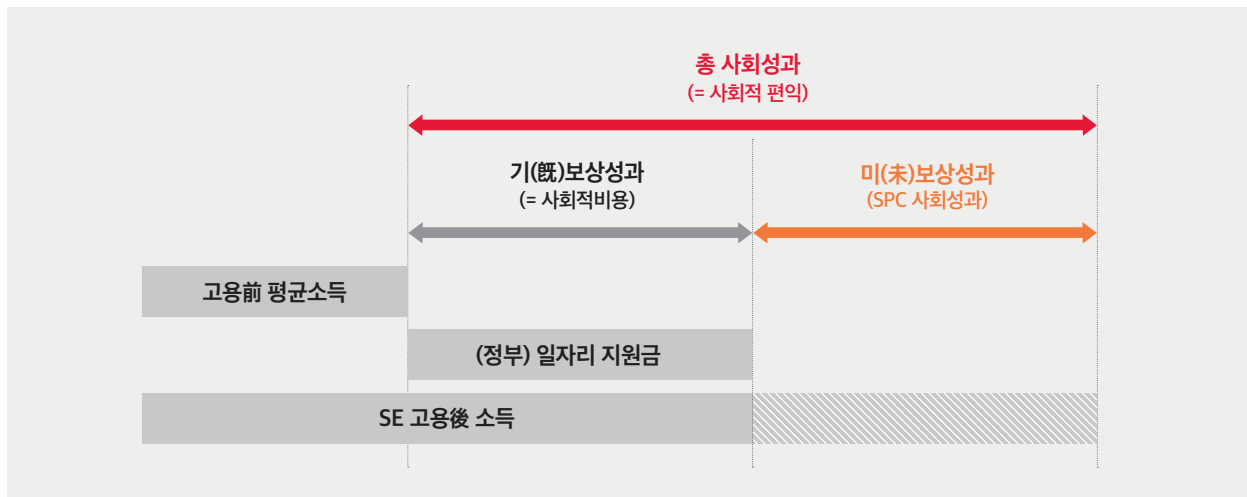
측정범위: 가격기구와 제도를 통해 보상되지 않은 미(未)보상 사회성과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 중 가격기구 또는 제도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보상 성과만을 측정

원칙

• 미보상 성과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이미 기존 시장에서 매출 및 지원금의 형태로 가격화되어 보상이 끝난 사회성과는 배제하고,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보상되지 못한 사회성과만을 인정한다.



<그림 1-3> 내부공정성과 사례로 보는 미보상 성과의 개념

• 단년도 성과

재무회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회계를 위한 사회성과 측정도 1년 단위로 측정한다. 즉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회성과를 측정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성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 즉 목표집단의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추어 성과를 인정한다.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형 사업(주로 위탁용역사업)의 성과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측정한다. 첫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결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연도에 해당 성과를 일괄 측정한다. 둘째,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중에도 실질적인 결과가 발생하며, 이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성과인 경우, 측정대상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성과에 반영한다.

3. 사회성과 측정대상 (취약계층 범위)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 범위를 준용하여 측정대상으로 정한다.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이다.

•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저소득자:**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령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준고령자1: 만 55세~60세 미만, 준고령자2: 만60세~65세 미만, 고령자: 만65세이상
3.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4. **성매매피해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및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5.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 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6.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 11. 범죄구호피해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12. 기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 책임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 되지 아니 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마. 노숙인
-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차. 보호종료아동
-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박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 포함

II. 사회성과 측정 프로세스

1. 6단계 측정과정



<그림 1-4> 사회성과 측정의 6단계 과정

1단계_ 사회적가치 여부의 판단: 사회적가치인가? 아닌가?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해결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가치 측정과 평가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사회적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이 '사회적가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회적가치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사회적가치의 범위와 개념이 달라지고, 사회적가치에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 사회적가치의 해결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가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사회적가치를 정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1) 사회적가치의 정의

- ① 동 시대의 특정사회에 속하는: 국제적, 국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지역적, 시대적 차이와 변화가 존재
- ② 구성원이 지대한 영향을 받는: 개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지구환경에 걸쳐 전구성원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문제
- ③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
- ④ 고통받고 있는 상태: 사회적가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없거나 조치가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
- ⑤ 집단적 해결의 필요와 추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공론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와 기대가 있는 공적 문제 public issue

2) 사회적가치 판단기준

현 시대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사회적가치를 해결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사회적가치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사회적가치 판단 기준으로 법률 및 제도, 정책, SDGs등을 활용한다. 국내 기준으로는 헌법기본권, 사회적가치 기본법안, 120대 국정과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국외 기준으로는 2015년 9월 전 세계 UN회원국들이 모여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한다.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가치는 조직의 정관, 총칙 등과 같이 공식적인 서면에 기재된 조직의 목적 및 사명에 준하여 판단한다.

헌법 기본권		사회적가치 기본법안		120대 국정과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기본권		사회적가치		전략				
평등권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자유권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개인의 자유	2	재난과 사고로부터의 안전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 교육 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의 권리 등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청구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4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권리	5	사회적 약자에 기회제공과 사회 통합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6	양질의 일자리 창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	공동체 복원과 지역사회 활성화						
		8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9	자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10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11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시민적 권리						
		12	그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국내						국외			

<그림 1-5> 사회적가치 판단 기준 예시

2단계_ 목표집단의 설정: 목표 대상은 누구인가?

일반적인 소비자 후생은 성과 측정의 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회문제와 목표집단에 대한 성과만을 인정한다. 사회성과에 반영되는 목표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1) 사회문제와 목표집단의 높은 연관성

목표집단은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및 솔루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해관계자이다. 기업의 활동으로 편익을 얻는 집단이 있더라도, 사회문제와 목표집단 간 인과관계를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목표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성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문제가 '청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영상서비스 부재'이고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청각장애인들에게 특화된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되, 청각장애인/비청각장애인에게 동일 가격에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자. 비청각장애인은 이 서비스가 아니라도 다른 대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을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청각장애인은 영상서비스 시장에서 배제되었다가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편익을 얻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이 설정한 사회문제 및 솔루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청각장애인'만을 목표집단으로 보며, 이들이 얻는 편익만을 사회성과로 측정한다.

2) 목표집단의 명확성 (특정가능성)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목표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집단을 특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여야 한다. 사회문제와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목표집단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목표집단의 규모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사회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범주를 준용하고 있으며 '3. 사회성과 측정대상(취약계층 범위) p.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3단계_ 사회적 성과 영역 설정: 사회적 성과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목표집단이 정의되면,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취하는 비즈니스 전략, 즉 사회적 성과 창출방식이 사회적 성과 영역 중 어느 곳에 속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해당 영역의 사회적 성과 창출방식에 따라 세부 성과지표를 결정한다. 성과영역별 세부지표는 <표 1-3>와 같으며, 본 매뉴얼의 제2부에서 각 지표의 측정 및 계산 방식을 소개한다.

<표 1-3> 사회적 성과 창출방식에 따른 성과영역별 세부지표

사회적 성과 영역	사회적 성과 창출방식	세부 성과지표
제품/서비스 성과	동일 제품의 할인/무료 제공	할인무료 제공
	시장배제집단을 위한 특화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내부공정 성과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취약계층 고용	직접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 및 이직기회 제공	경과성 일자리
외부공정 성과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돌봄서비스 대체	중증 돌봄 대체
	소농의 소득 증진	소농거래
	해외 소농의 소득 증진	공정무역 - 농산물
	취약국가 생산자의 추가 거래 기회 제공	공정무역 - 비농산물
	취약지역 주민 소득 증진	공정여행 - 해외, 국내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액 증대	클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창업지원 등을 통한 소득 증진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취약생산자의 추가 거래 기회 제공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신진예술가와 작품 거래	문화예술 자산보호
	공익활동 지원	비영리 조직 지원
	공공예산 효율성 증대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취약생산자 소득 증진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환경 성과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친환경 대체재료
		친환경 프로세스
		생태계 복원력 강화

4단계_ 솔루션의 시장화 여부 판단: 시장화된 솔루션인가? 아닌가?

1) 시장화의 개념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보상된 상태를 '시장화'라고 한다. 이는 해당 사회문제가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을 통해 잘 해결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이 제시하는 솔루션(제품/서비스, 기술, 거래방식 등)이 이미 일반(영리)시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시장화가 이루어지면, 사회적가치는 이미 시장의 가격기구에 반영되어 있으며 준거시장의 원칙에 따라 보상이 끝난 것으로 보고 사회성과인센티브의 대상인 미보상 성과에서 제외된다.

2) 시장화 판단기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라면 시장화는 크게 고려할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성과인센티브처럼 기존 가격기구의 왜곡이나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회문제 해결방식(솔루션)의 시장화 여부는 사회성과 측정에 있어 매우 예민한 이슈이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표 1-4>과 같이 시장화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앞서 1단계에서 사회문제의 정의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해당 솔루션의 시장화 여부 역시 성과측정 시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예를 들어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농산물 직거래 방식을 통해 소농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면서 전체 농산물 거래시장에서 직거래 비중이 5%를 넘어서고 있으며, 많은 영리업체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면서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직거래 방식은 보편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직거래 방식을 통한 사회성과는 시장화되어 거래가격을 통해 보상이 끝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아직 시장화 판단기준을 개념적 수준에서 규정한다. 앞으로 시장화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1-4> 시장화 판단기준

판단기준	내용	논의 예시
해당 솔루션의 제도화	이미 제도적으로 적용된 해당 솔루션을 사회적기업이 적용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이 제시한 솔루션이 제도화 되어 목표집단의 제도적 이용이 가능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가전의 재활용 처리에 대한 제도와 규정 • 공동간병서비스의 제도화
해당 솔루션의 경쟁시장 존재 또는 대형 영리기업의 참여	해당 솔루션을 이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수의 영리/비영리조직이 경쟁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대형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광산업 시장의 대기업 참여
해당 솔루션의 상당한 시장점유율	해당 솔루션이 일반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시장점유를 하고 있어서 목표집단이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직거래

5단계_ 측정식 및 비교가격기준 설정: 비교가격은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구체적인 성과측정 지표가 정해지면 표준식에 맞추어 적절한 비교가격의 기준값^{proxy}을 설정한다. 앞서 설명한 가격추정 방식에 따라 proxy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proxy는 준거시장 비교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값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측정시스템을 통해 일부 지표에 대하여 proxy와 proxy DB를 제공하고 있다.

<표 1-5> 성과지표별 가격추정방법과 Proxy 및 Proxy DB

사회성과 영역	사회성과 창출방식	Proxy	가격추정방식	Proxy DB
제품/서비스 성과	동일 제품 할인/무료 제공	시장에서의 제품/서비스 가격	일반시장가격	사례별 탐색/검증
	시장배제집단을 위한 특화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시장에서의 제품/서비스 가격	공급의사가격	사례별 탐색/검증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시장에서의 제품/서비스 가격	지불의사가격	사례별 탐색/검증
	가격 및 원가가 통제된 시장에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생산비용 투입	시장에서의 생산원가율	추가투입비용	산업별 생산원가율 DB
내부공정 성과	취약계층 직접고용	취약계층의 이전소득 평균, 사회적기업 평균임금	일반시장가격	유형별 평균임금 DB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 및 이직 기회 제공	취약계층의 이전소득 평균, 사회적기업 평균임금	일반시장가격	유형별 평균임금 DB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돌봄서비스 대체	주간보호시설 이용 비용	일반시장가격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외부공정 성과	소농거래	기존 거래 시 생산자 수취가격	대체방식비용	농업유통비비율 DB
	공정무역 - 농산물	기존 거래 시 생산자 수취가격	대체방식비용	국제선물거래소 DB
	공정무역 - 비농산물	취약생산자의 소득증대분	대체방식비용	국가별 부가가치율 DB
	공정여행 - 해외, 국내	취약생산자의 소득증대분	대체방식비용	(해외) 국가별 부가가치율 DB (국내) 산업별 부가가치율 DB
	크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공익펀딩모금액의 증대분	대체방식비용	사례별 탐색/검증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취약생산자의 소득증대분	대체방식비용	산업별 부가가치율 DB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취약생산자의 소득증대분	대체방식비용	산업별 부가가치율 DB
	문화예술 자산보호	신진예술인의 소득증대분	대체방식비용	산업별 부가가치율 DB
	비영리 조직 지원	공익활동 지원 기부액	일반시장가격	사례별 탐색/검증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공공예산 효율성 증대분	대체방식비용	사례별 탐색/검증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비용	대체방식비용	사례별 탐색/검증
환경 성과	자원소비 절감	절약된 신규자원의 가격	대체방식비용	산업별 생산원가율 DB
	환경오염 저감	환경피해비용	지불의사가격	재료별 Eco-cost DB

6단계_ 사회성과 보상 여부 판단: 이미 보상받은 사회성과는 얼마인가?

총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나면 이해관계자 회계 원리에 따라 이미 주어진 보상, 또는 해당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지불한 사회적비용을 총 사회성과에서 제외한다. 이미 보상된 가치로 판단되는 사회적비용은 창출된 사회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표 1-6> 사회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처리되는 사회적비용 사례

이미 보상된 사회성과로 보는 경우 (특정 사회성과 창출을 전제한 외부 기부금 및 지원금)	보상된 사회성과로 보지 않는 경우 (특정 사회성과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 기부금 및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에 대한 제품/서비스 할인/무료 제공을 전제한 외부 기부금 또는 지원금 •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 중에 사회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사회적 일자리 지원금 • 소농생산 지원을 위해 제공된 농산물 유통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 컨설팅(비용) 지원 • 전문인력(비용) 지원 • 조직운영을 위한 정기 회비/후원 • 개인 차원의 소액기부

2. 사회성과의 4가지 영역

사회성과인센티브는 기업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방법에 따라 사회성과를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사회적기업의 사명^{social mission}이 무엇인지에 따라 ①삶의 질 개선, 불평등 해소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와 ②플라스틱, 대기오염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사회적가치가 창출되는 방법에 따라 ①제품·서비스 자체에서 발생하는 제품/서비스성과(前 사회서비스성과), ②취약계층 고용, 취업지원 등 기업 내부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내부공정성과(前 고용성과), ③취약생산자/소농 등의 사회적기업 외부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외부공정성과(前 사회생태계성과)로 구분한다.

<표 1-7> 사회성과의 4가지 영역

사회적기업의 사명		
사회성과 창출 방법	사회문제 해결	환경문제 해결
제품/서비스(product)	I. 제품/서비스성과(前 사회서비스성과) 1. 할인/무료 제공 2.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IV. 환경성과 1. 재사용 2. 재제조 3. 재활용 4. 친환경 대체재료 5. 친환경 프로세스 6. 생태계 복원력 강화
공정(process)	II. 내부공정성과(前 고용성과) 1. 직접고용 2. 경과성 일자리 3. 중증 돌봄 대체	
	III. 외부공정성과(前 사회생태계성과) 1. 소농거래 2. 공정무역 - 농산물 3. 공정무역 - 비농산물 4. 공정여행 - 해외, 국내 5. 크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7. 취약생산자 추가 거래 기회 제공 8. 문화예술 자산보호 9. 비영리 조직 지원 10.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11.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이렇듯 사회적기업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 방법에 따라 사회성과는 제품/서비스, 내부공정, 외부공정, 환경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 제품/서비스성과(前 사회서비스성과)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광의의 제품과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발생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의미하며, 준거시장의 가격과 비교하여 제품 가격과의 차이를 이해관계자의 편익으로 측정한다.

• 내부공정성과(前 고용성과)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탈북자,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발생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 효과를 의미하며 주로 근로소득 증대분으로 측정한다. 근로소득 증대분은 고용된 취약계층의 개선된 삶의 질을 의미하는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와 정부의 관련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 등 사회적 가용예산의 증대 효과를 모두 포함한다.

• **외부공정성과(前 사회생태계성과)**

외부공정성과는 사회의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충분하고 적절한 거래조건이나 거래기회를 얻지 못하는 취약한 생산자/소농 등을 사회적기업이 생산과정의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성과이다. 또한 사회공공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시민자산을 보존하고 확대한 성과도 이에 포함된다.

• **환경성과**

환경성과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또는 그 생산과정을 통하여 한정된 자원의 소비를 줄이거나 환경오염의 발생을 저감시킨 성과를 의미한다. 소비를 줄인 자원의 가치, 그리고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비용을 화폐가치로 추정하여 측정한다.

1) 기업의 고유 미션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성과 영역

사회성과 영역은 개별 기업의 제품/서비스 특성, 산업 유형, 조직 형태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위해 더 많은 간병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사명일 수 있다. 반면 또 다른 기업은 높은 품질의 간병서비스를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회성과를 측정할 때, 첫 번째 기업은 내부공정성과를, 두 번째 기업은 제품/서비스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두 가지 모두를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기업은 두 성과 모두를 측정할 수 있다.

2) 사회성과 영역 간 비중첩성, 비관계성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사회성과 영역은 서로 중첩되지 않으며, 성과영역 간에 가치 우월이나 인과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제품/서비스성과가 환경성과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내부공정성과가 존재해야만 제품/서비스성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사회성과 영역 탐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성과인센티브는 기업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방법에 따라 사회성과를 4개 영역, 22개 지표로 구분한다.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성과가 다양하면, 두 개 이상의 영역과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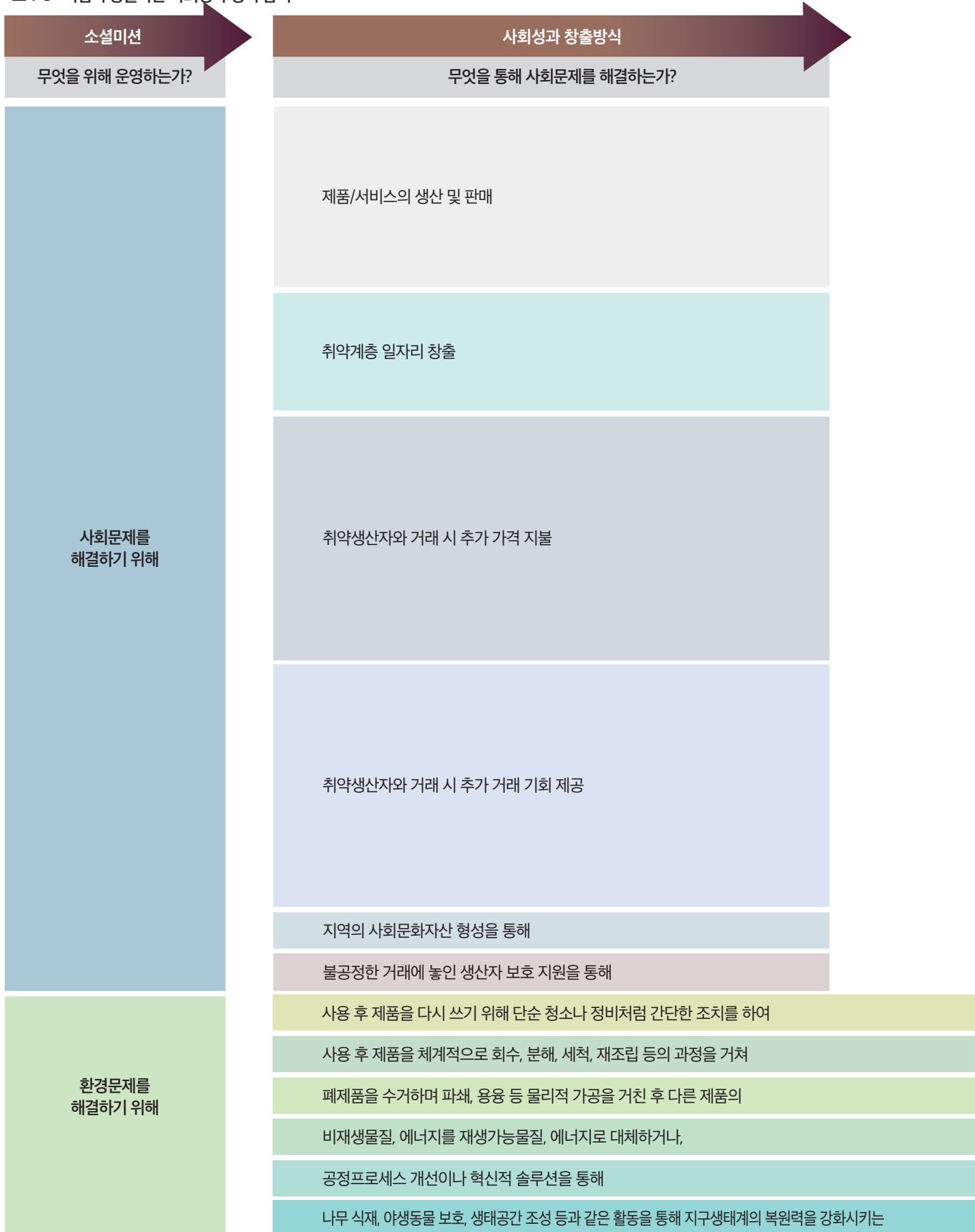
기업의 소셜미션, 사회성과 창출방식, 비즈니스 모델, 목표집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사회성과는 어느 성과 영역에 해당하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살펴보자.

첫번째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목적, 즉 소셜미션이 불평등 해소나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플라스틱 쓰레기나 환경오염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다음으로, 무엇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따라 영역을 구분한다. 사회적기업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장애보조기기처럼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 자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라든지,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팔거나 무료로 제공해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 제품/서비스성과) 또는 취업기회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 내부공정성과) 공정무역이나 농산물 직거래처럼 공정한 시장 거래를 형성하거나 공공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하기도 한다(⇒ 외부공정성과).

아래 <표 1-8>를 통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에 해당하는 영역과 세부지표를 스스로 탐색해볼 수 있다.

<표 1-8>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 영역 탐색



비즈니스 모델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 사회성과 영역 및 지표
어떤 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I. 제품/서비스성과 - 1. 할인/무료 제공
제품/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무료/할인하여 판매한다면>	I. 제품/서비스성과 - 1. 할인/무료 제공
기존 시장에 없는 제품/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한다면>	I. 제품/서비스성과 - 1. 할인/무료 제공
가격 및 원가가 통제된 시장에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생산비용 투입한다면>	I. 제품/서비스성과 - 2. 추가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직접 고용한다면>	II. 내부공정성과 - 1. 직접고용
직업 교육을 통해 취업과 이직을 지원한다면>	II. 내부공정성과 - 2. 경력성 일자리
중증장애인 자립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면>	II. 내부공정성과 - 3. 중증 돌봄 대체
소규모 농가의 직거래 유통을 확대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1. 소농거래
해외 현지 농가에게 적정가격 지불로 공정한 거래를 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2. 공정무역 - 농산물
공익사업을 위한 모금 또는 거래기회 제공을 위해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5. 클라우드펀딩
문화예술인과 거래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8. 문화예술 자산보호
동일한 미션을 가진 비영리조직에 기업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기부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9. 비영리조직 지원
해외 현지 생산자에게 적정가격 지불로 공정한 거래를 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3. 공정무역 - 비농산물
공정여행으로 해외 현지 생산자와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4. 공정여행
공정여행으로 국내 현지 생산자와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을 지원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7. 취약생산자 추가 거래 기회제공
취약생산자에게 수익이 창출되도록 구매를 하거나,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면>	
공공부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10.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특수직 근로자들과 공정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한다면>	III. 외부공정성과 - 11.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같은 목적으로 다시 사용한다면>	IV. 환경성과 - 1. 재사용
새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면>	IV. 환경성과 - 2. 재제조
재료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면>	IV. 환경성과 - 3. 재활용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품을 만든다면>	IV. 환경성과 - 4. 친환경 대체재료
제품생산에 쓰이는 재료나 에너지를 줄인다면>	IV. 환경성과 - 5. 친환경 프로세스
사업을 한다면>	IV. 환경성과 - 6. 생태계 복원력 강화

3. 성과 측정산식

1) 원리

$$(\text{단위당 Baseline SV} - \text{단위당 기업 창출 SV}) \times \text{기업활동 단위} \times \text{화폐화 계수} \times \text{기여율} - \text{외부지원금}$$

2) 단위당 기업창출 사회성과 및 단위당 베이스라인 사회성과

‘단위당 기업 창출 사회성과(이하 SV)’란 사회적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출한 사회성과의 단위당 수치를 말한다. ‘단위당 베이스라인 사회성과(이하 SV)’는 기업이 창출하는 성과와 비교할 수 있는 일반 시장의 단위당 수치를 말한다. ‘단위당 기업 창출 SV’와 ‘단위당 베이스라인 SV’ 비교를 통해, 기업이 일반 시장 혹은 기존 문제 해결방식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활동 단위

이렇게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한 단위당 사회성과를 계산하였다면, 해당 사회성과가 발생된 활동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단년도의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1년간 기업이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한 활동의 규모가 ‘기업활동 단위’이다. 앞서 산출한 단위당 SV 수치에 기업활동 단위를 곱하면, 연간 창출된 사회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4) 화폐화 계수

‘화폐화 계수’란 사회성과를 원 단위, 즉 화폐가치로 환산해 주는 계수이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제품/서비스성과, 내부공정성과, 외부공정성과 및 환경성과 관련 화폐화 계수를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적용하고 있다.

5) 기여율

‘기여율’은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해당 기업이 기여한 부분을 의미한다. 하나의 사회성과는 하나의 기업을 통해 창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치사슬 내 많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창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성과를 만드는 데 투입된 사회적 기업 및 여러 이해관계자의 각 기여분을 계산하여, 총 사회성과에 해당 기업의 기여율을 곱해 성과를 측정한다. 사회성과 창출에 대한 가치사슬 단계별 기여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율 또는 원가(투입비용) 등을 적용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 원가 기반: 해당 사업에 대하여 총 투입된 비용 중 해당기업이 투입한 비용(또는 투입비용 환산액)의 비율을 기여율로 적용함
 - 시장에서 환산되는 부가가치의 부재로 부가가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거래와 투입(기술공동개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창출된 성과의 경우
- 부가가치 기반: 최종 가격 대비 각 기여자의 부가가치율을 기여율로 적용함
 - 최종생산물의 가격에 대한 각 가치사슬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감가상각비 기반: PJT형 사업 및 고정자산으로부터 성과가 발생하는 경우 e.g) 건설, 수주사업(OKEF)

6) 외부지원금

사회성과인센티브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 중 시장 내 미보상 성과만을 측정한다. 따라서, 해당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 기업 외부의 기부금 및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보상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사회성과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여 최종 미보상 성과를 계산한다.

제2부

사회성과 유형별 측정방식

I. 제품/서비스성과

1. 할인/무료 제공
2.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II. 내부공정성과

1. 직접고용
2. 경과성 일자리 (사회적기업 취업 후 이직 지원)
3. 중증 돌봄 대체

III. 외부공정성과

1. 소농거래
2. 공정무역 - 농산물
3. 공정무역 - 비농산물
4. 공정여행 - 해외, 국내
5. 크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7.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8. 문화예술 자산보호

9. 비영리 조직 지원
10.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11.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IV. 환경성과

1. 재사용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2. 재제조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3. 재활용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4. 친환경 대체재료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5. 친환경 프로세스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6. 생태계 복원력 강화

I.

제품/서비스성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조직이다. 기존 시장에서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이 비싸서 가난한 이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 이거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다. 사회적기업은 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줄이거나, 이익 감소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필요한 이들에게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품/서비스성과란 이처럼 기존 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존의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도 사회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1. 할인/무료 제공 2.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로 측정할 수 있다.

<표 2-1> 제품/서비스성과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세부 지표

비즈니스 모델	세부 지표
일반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할인/무료 제공	1. 할인/무료 제공
시장 배제 취약계층을 위해 특화된 제품/서비스 생산하여 제공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 제고	
일반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취약계층에게 고품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	2.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1. 할인/무료 제공

제품/서비스	할인/무료 제공																					
지표개요	다음의 세가지 경우 해당 성과 (1) 동일품질 가격할인: 일반 시장서비스와 동일한 내용과 품질의 제품/서비스를 목표집단(취약계층)에게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제공하여 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2) 시장 배제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제품/서비스 제공 (3)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 제고																					
측정 산식	(일반 시장의 제품/서비스 제공가격 -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 제공가격) × 총 할인/무료 판매량 - 해당 제품/서비스 관련 외부 지원금																					
Proxy	<p><표 2-2> 가격추정방식 및 적용순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가격추정방식</th> <th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내용</th> <th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적용 순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가격기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시장가격</td> <td> • 기업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서비스의 평균적인 시장가격 • 업계 평균가격, 법정 가격 등 공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 </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급의사가가격</td> <td>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우, 동종 업종의 공급자가 동일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고자 하는 가격 • 통상 기존의 수익률 또는 수익액이 보장되는 지점에서 공급의사가 발생한다고 간주함 • 해당 산업의 생산비, 수익률 등에 대한 국가/산업단위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정 </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불의사가가격</td> <td>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회문제의 당사자나 문제의 해결에 책임이 있는 잠재적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 기존 솔루션의 사회문제 해결 단위당 소요 비용을 지불의사가가격으로 봄 </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비용기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체방식 비용</td> <td> • 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없었을 경우, 기존의 솔루션에 사회가 지불했을 가격(비용) </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추가투입비용</td> <td> • 제품/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원가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원가 투입분을 사회성과의 가격으로 간주 • 주요 서비스에 인적 서비스가 부과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 </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한 적용</td> </tr> </tbody> </table> <p>(1) 일반시장가격 - 귀사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의 평균적인 시장가격 산정 - '보수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용할만한 평균가격 혹은 낮은 시장가격을 적용</p> <p>(2) 공급의사가가격 - 특화 제품/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비용 + 기존 서비스의 적절한 이익 > 공급의사가가격 추정</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 style="font-size: small;"> 공급자의 기존 서비스 가격: 생산원가(B) 이익(A) 기업 특화 제품/서비스 가격: 생산원가(B') 이익(A') ↓ 기업 특화 제품/서비스 가격: 생산원가(B') 이익(A') </p> <p style="font-size: small;">(A') < A, B < B', Difference = 사회성과</p> </div> <p><그림 2-1> 공급의사가가격 추정 원리</p> <p>(3) 지불의사가가격 - 사회적기업이 제시하는 솔루션이 기존의 공공조직이나 NGO의 방식 대비 효율적인 경우 - 기존의 정부, 공공조직, NGO 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하고 있는 예산으로 추정함 - 개별소비자의 지불의사가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객관성의 문제로 인해 적용하지 않음</p>	구분	가격추정방식	내용	적용 순위	가격기반	일반시장가격	• 기업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서비스의 평균적인 시장가격 • 업계 평균가격, 법정 가격 등 공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	1	공급의사가가격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우, 동종 업종의 공급자가 동일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고자 하는 가격 • 통상 기존의 수익률 또는 수익액이 보장되는 지점에서 공급의사가 발생한다고 간주함 • 해당 산업의 생산비, 수익률 등에 대한 국가/산업단위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정	2	지불의사가가격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회문제의 당사자나 문제의 해결에 책임이 있는 잠재적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 기존 솔루션의 사회문제 해결 단위당 소요 비용을 지불의사가가격으로 봄	3	비용기반	대체방식 비용	• 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없었을 경우, 기존의 솔루션에 사회가 지불했을 가격(비용)	4	추가투입비용	• 제품/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원가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원가 투입분을 사회성과의 가격으로 간주 • 주요 서비스에 인적 서비스가 부과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	제한 적용
구분	가격추정방식	내용	적용 순위																			
가격기반	일반시장가격	• 기업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서비스의 평균적인 시장가격 • 업계 평균가격, 법정 가격 등 공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	1																			
	공급의사가가격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우, 동종 업종의 공급자가 동일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고자 하는 가격 • 통상 기존의 수익률 또는 수익액이 보장되는 지점에서 공급의사가 발생한다고 간주함 • 해당 산업의 생산비, 수익률 등에 대한 국가/산업단위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정	2																			
	지불의사가가격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회문제의 당사자나 문제의 해결에 책임이 있는 잠재적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 기존 솔루션의 사회문제 해결 단위당 소요 비용을 지불의사가가격으로 봄	3																			
비용기반	대체방식 비용	• 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없었을 경우, 기존의 솔루션에 사회가 지불했을 가격(비용)	4																			
	추가투입비용	• 제품/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원가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원가 투입분을 사회성과의 가격으로 간주 • 주요 서비스에 인적 서비스가 부과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	제한 적용																			
참고사항	(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및 수혜대상의 취약계층 증빙자료 필요 (2) 단,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이 발행한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서비스 제공량 인정(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내 취약계층 유형 및 명수 세부 기입 필요)																					

2.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제품/서비스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지표개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적인 생산비용 투입으로 품질을 높인 성과(동일 가격 대비 고품질의 제품/서비스로 수혜자의 편익을 증진시킨 성과)
측정 산식	$(\text{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 제공 원가율} - \text{일반 시장의 제품/서비스 원가율}) \times \text{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 제공가격} \times \text{총 판매량} - \text{해당 제품/서비스 관련 외부지원금}$
Proxy	(1) 일반 시장의 제품/서비스 원가율 - 제품/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원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원가 투입분을 사회성과의 가격으로 간주 - 주요 서비스에 인적 서비스가 부가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
참고사항	추가투입비용 인정 Case (1) 가격/원가 통제로 인해 일반 시장의 차선 서비스 보다 원재료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결식아동을 위해 도시락의 제조 원가율을 높인 도시락 사회적기업(단, 추가 투입 원가율이 입증된 경우여야만 함) (2) 일반 시장의 서비스에는 없는 재화/서비스를 부가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경우: 요양환자를 위해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여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단, 품질 제고가 입증된 경우여야만 함) (3) 대인서비스의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를 업계 평균보다 더 지급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경우: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에게 업계 평균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사회적기업(단, 품질 제고가 입증된 경우여야만 함)

II. 내부공정성과

장애인, 고령자, 노숙자 등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람을 '노동취약계층'이라고 한다. 내부공정성과란 노동취약계층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편익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이 내부공정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직접고용

사회적기업이 노동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

• 경과성 일자리 (사회적기업 취업 후 이직 지원)

사회적기업이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훈련, 적극적 취업 알선 및 연계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의 다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 (단, 창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외부공정성과 -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성과로 측정함)

• 중증 돌봄 대체

중증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자립 혹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

1. 직접고용

내부공정	직접고용																
지표개요	직접 고용을 통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 증진 성과																
측정 산식	<p>(1) 측정원리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킨 성과</p> <p>(2) 측정산식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노동취약계층의 근로소득 -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 취업 이전의 근로소득) x 근무개월 수 - 고용 관련 외부지원금</p>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2-2> 사회적기업의 내부공정성과 측정원리</p> </div>																
주요 개념 및 범주	<p>(1) 노동취약계층: 심신의 건강상태, 경제수준, 학력 및 기술 등을 이유로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기 어렵거나, 노동시장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람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취약계층 준용)</p> <p><표 2-3> 노동취약계층의 분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일반저소득자(20세 이상 ~ 55세 미만)</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장애인</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저소득자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소득의 60% 이하인 자를 의미함. 연령은 20세 이상~60세 미만으로 제한함. 이 외의 연령은 청소년, 준고령자 및 고령자로 구분함</td> <td>선천적, 후천적 요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장애인의 고용 성과는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1~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3~6급)를 구분하여 적용함. 장애유형은 '주장애'에 따라 판단 함</td> </tr> <tr>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준고령자(만 55세~ 65세 미만)</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고령자(만65세 이상)</th> </tr> <tr> <td>노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은퇴 시점을 지남으로써 노동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자</td> <td>고령으로 인해 체력이 약화되면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자</td> </tr> <tr>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기타. 학교 밖 청소년</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기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th> </tr> <tr> <td>소년원 퇴소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등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고 자립의 필요가 있는 청소년도 노동취약계층에 포함함</td> <td>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으로 노동취약계층에 포함함</td> </tr> <tr>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기타. 노숙인</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기타</th> </tr> <tr> <td>주로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쉼터나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자</td> <td>경력단절여성,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호피해자, 출소자, 청년장기실업자 등을 포함하며, 일반저소득층에 준한 취약계층으로 측정함</td> </tr> </tbody> </table> <p>- 노동취약계층 유형 중 2~3개 유형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근로자는 더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유형에 준하여 측정 - 근로소득 증가분: 취약계층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분,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예산 절감분, 세수(소득세) 확대 효과 모두 포함</p>	일반저소득자(20세 이상 ~ 55세 미만)	장애인	일반저소득자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소득의 60% 이하인 자를 의미함. 연령은 20세 이상~60세 미만으로 제한함. 이 외의 연령은 청소년, 준고령자 및 고령자로 구분함	선천적, 후천적 요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장애인의 고용 성과는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1~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3~6급)를 구분하여 적용함. 장애유형은 '주장애'에 따라 판단 함	준고령자(만 55세~ 65세 미만)	고령자(만65세 이상)	노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은퇴 시점을 지남으로써 노동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자	고령으로 인해 체력이 약화되면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자	기타. 학교 밖 청소년	기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소년원 퇴소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등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고 자립의 필요가 있는 청소년도 노동취약계층에 포함함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으로 노동취약계층에 포함함	기타. 노숙인	기타	주로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쉼터나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자	경력단절여성,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호피해자, 출소자, 청년장기실업자 등을 포함하며, 일반저소득층에 준한 취약계층으로 측정함
일반저소득자(20세 이상 ~ 55세 미만)	장애인																
일반저소득자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소득의 60% 이하인 자를 의미함. 연령은 20세 이상~60세 미만으로 제한함. 이 외의 연령은 청소년, 준고령자 및 고령자로 구분함	선천적, 후천적 요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장애인의 고용 성과는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1~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3~6급)를 구분하여 적용함. 장애유형은 '주장애'에 따라 판단 함																
준고령자(만 55세~ 65세 미만)	고령자(만65세 이상)																
노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은퇴 시점을 지남으로써 노동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자	고령으로 인해 체력이 약화되면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자																
기타. 학교 밖 청소년	기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소년원 퇴소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등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고 자립의 필요가 있는 청소년도 노동취약계층에 포함함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으로 노동취약계층에 포함함																
기타. 노숙인	기타																
주로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쉼터나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자	경력단절여성,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호피해자, 출소자, 청년장기실업자 등을 포함하며, 일반저소득층에 준한 취약계층으로 측정함																

(1) 사회적기업 취업 이후의 근로소득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근로소득
 = 기본급 및 성과급 + 소득세/주민세 + 4대보험(개인 및 사업자 부담금) + 급여성 복리후생비

<표 2-4> 사회적기업 취업 이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및 성과급	소득세/주민세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근로소득 • 기본급: 분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성과급: 개인의 작업량이나 성과에 따른 급여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보통기업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함. 소득세/주민세는 우리 사회의 조세 편익으로서 사회 성과로 간주함.
4대 보험(개인 및 사업자 부담금)	급여성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됨. 소득에 기반한 연금 및 보험제도로써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 부담금과 사업자 부담금으로 나누어 짐. 소득 발생에 따라 보험 및 연금의 편익이 발생하므로, 사회성과로 간주함	• 종업원 또는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교육비 보조금) • 종업원의 진료비 부담액 • 불우종업원에 대한 생계비 또는 학비 보조금 • 종업원에 대한 법인 부담금 이외의 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 자가운전보조수당 중 월 20만원 초과액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 중 이주 비용 상당액(여비교통비) 초과액

(2) 사회적기업 취업 이전 근로소득의 추정

신뢰성과 측정비용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근속년수, 장애유형과 정도 등에 따른 평균 소득 수준을 활용함. 특히, 노숙인은 근로 의욕이 현저히 낮고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질환 관련 중증장애인의 평균소득으로 proxy를 설정함

- 취약계층 유형별 취업 전 근로소득: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국가통계자료(별첨2. Proxy DB 출처 p.85 참고)를 통해 평균 소득수준을 도출하며, 모든 취약계층 유형은 본 자료를 기준정보(proxy)로 적용할 것을 기본으로 함. 다만 본 자료를 통해 나온 기준정보 수치가 없거나 최저시급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기준정보로 준용함
- 최저시급: 법정 최저시급으로, 통계값을 통해 근로소득을 도출했다라도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은 받을 수 있기에 기준정보가 되는 수치의 최저치는 최저시급에 맞춤. 다만 장애인과 노숙인은 법적으로 최저시급 적용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해당 기준에서 제외함
- 직전 근로소득: 만약 근로자 본인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기 전 소득이 없었거나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았음을 소득증명원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수용함

Proxy

<표 2-5> 경제활동인구 구성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취업자	가족 종사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주 임금, 급여, 수수료, 이익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모든 사람, 기본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임금근로자	개인, 가구, 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사람
상용직:	근로자 가운데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법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과는 달리 특정한 고용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일용직:	통상 근로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을 받는 노동자나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
비임금근로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예술가, 프리랜서 등 일정 형태의 사업체를 갖추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 또는 가족의 수입을 위해 일한 사람
종업원 없는 자영업:	종업원을 두지 않고 고용주 단독으로 운영되는 자영업
종업원 있는 자영업:	고용주 외 1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
기타:	무급가족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노동을 제공하나 급여가 없거나 급여의 정함이 없는 사람
실업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였으나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 일자리만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일을 할 능력은 있는데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표 2-6> 사회적기업 취업 이전 평균 소득 Proxy 산출 시 취약계층 유형별 적용되는 기준 (사회적기업 노동시장 진입 대상)

적용기준		취약계층 유형						노숙인	자립준비 청년	학교밖 청소년	저개발국 근로자	기타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탈북민 등)	
		일반 저소득자	준고령자 (만60~64세)	고령자 (만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정신장애 유형 평균 소득						
Proxy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임금 근로자	상용직	×	×	×	×	×	정신장애 유형 평균 소득	최저임금		
				임시직	○	○	○	○	○				
				일용직	○	○	○	○	○				
			비임금 근로자	종업원 없는 자영업	○	○	○	○	○				
				종업원 있는 자영업	×	×	×	×	×				
			기타	○	○	○	○	○					
			실업자	○	○	○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사회성과 감가/일몰 기준 적용여부 (채용 후 50년(60개월)초과 시)		감가*	적용 없음	적용 없음	적용 없음	감가	일몰	일몰	기준연령 이후일몰	일몰	감가

* 예외적 적용
경력단절여성 및 장기청년실업자 : 3년(36개월) 후 일몰

참고사항

- (1) 노동취약계층 대상 기준
 -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는 취약계층은 경제적 필요가 높은 대상일 것을 전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취약계층)
 - 중위소득 150%: 내부공정성과의 대상이 되는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급여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만 성과로 인정함 (근로자의 부양 가구원수 반영)
 - 4대보험: 고용안정성 파악을 위해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및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이 된 근로자만 내부공정성과로 인정함
- (2) 장기 근속자에 대한 내부공정성과 감가 적용: 채용 후 5년 (60개월) 초과 시
 - 저소득층 근로자가 사회적기업에 고용될 경우 수년간 일하면서 번 돈으로 저소득상태에서 벗어나고,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이 가능할 만큼 직무기술이 향상됨. 이러한 경우 사회적기업 취업 이전소득과 현재의 근로소득 간의 격차만큼 실제 내부공정성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 정도 근무한 자라면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노동취약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판단, 그만큼 감가함
 - 단, 고령자, 중증장애인과 같이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노동취약성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 취업 이전 소득'을 그대로 반영
 -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장기실업자: 다른 취약계층과 달리 취업과 동시에 노동취약상태의 원인으로부터 벗어나며, 노동력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빨리 누리게 되기 때문에, 3년이 초과하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아 내부공정성과로 측정하지 않음
- (3) 외부지원금
 - 내일키움일자리, 일자리안정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외부지원금은 사회에서 보상은 성과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성과에서 제외함

2. 경과성 일자리 (사회적기업 취업 후 이직 지원)

내부공정	경과성 일자리 (사회적기업 취업 후 이직 지원)
지표개요	노동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시킨 성과
측정 산식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1) 측정원리 ‘노동취약상태’의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여 전문화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타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가능상태’에 이르도록 한 기여분을 측정</p> <p>(2) 측정산식 $(\text{노동가능상태 평균 근로소득} - \text{노동취약상태 평균 근로소득}) \times \text{근무개월 수} - \text{외부지원금}$</p> </div>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2-3> 경과성 일자리 성과 측정원리</p>
주요 개념 및 범주	<p>(1) 노동취약상태: 취약계층이 해당 사회적기업에게 고용 및 훈련 등의 지원을 받기 전의 상태</p> <p>(2) 노동가능상태: 해당 취약계층이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벗어나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 없는 자영업 등 최소한의 근로활동을 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p>
Proxy	<p>(1) 노동취약상태 평균 근로소득: 직접고용성과의 사회적기업 취업 이전소득 준용</p> <p>(2) 노동가능상태 평균 근로소득: 실업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의 해당 계층의 평균 소득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 적용</p>
참고사항	경과성 일자리 (사회적기업 취업 후 이직 지원) 성과는 취약계층 근로자 이직 후 1년 동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함 (이직 후 1년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직업훈련에 의한 기여라고 보지만, 1년 이후부터는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의 성과로 간주함)

3. 중증 돌봄 대체

내부공정	중증 돌봄 대체
지표개요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돌봄서비스 대체 성과
측정 산식	<p>(1) 측정원리 보호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근무시간 동안 발생하는 중증장애인 돌봄 관리 및 지원해준 비용과 기여를 측정</p> <p>(2) 측정산식 중증장애인 연간 총 근무시간 x 주간보호시설의 시간당 이용 비용 = (월평균 근무시간 x 근무개월 수) x 주간보호시설의 시간당 이용 비용</p>
Proxy	주간보호시설의 시간당 이용비용: 보수성의 원칙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국내 주간보호시설의 평균적인 이용비용 (시간당)을 일괄적용(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조사)
참고사항	기업이 발달장애인의 돌봄관리 및 자립지원 등을 미션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측정함

III. 외부공정성과

외부공정성과는 취약지역의 소농/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 다른 사회적기업의 소득(수입) 증진과 역량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말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문화적 자산을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효과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과들은 앞서 살펴본 제품/서비스성과나 내부공정성과와 달리 사회적기업 내부가 아닌 외부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성과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부적 기여를 사회적기업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성과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성과가 창출되며, 이에 따라 세부 성과지표를 판단해 볼 수 있다.

• 추가적인 가격 지불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 또는 농촌 지역의 빈농은 기존 시장에서는 가격 교섭력이 낮아 생산물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기 어렵다. 추가적인 가격 지불 방식은 이들 영세 공급자에게 기존 시장 대비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이들의 소득 또는 수입을 높여주는 성과이다.

• 추가적인 거래 기회 확보

유통시장 자체가 없거나 불안정하여 거래 기회를 확보하기 힘든 취약지역/산업의 소농/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주체로서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이다. 소농에 대한 계약거래제 적용, 거래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오지마을을 관광상품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 지역 커뮤니티 또는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 시민자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

사회적기업 중에는 지역 커뮤니티나 사회 전체를 위한 문화적 자산을 형성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사명인 기업이 있다. 이러한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하나의 표준화된 식보다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응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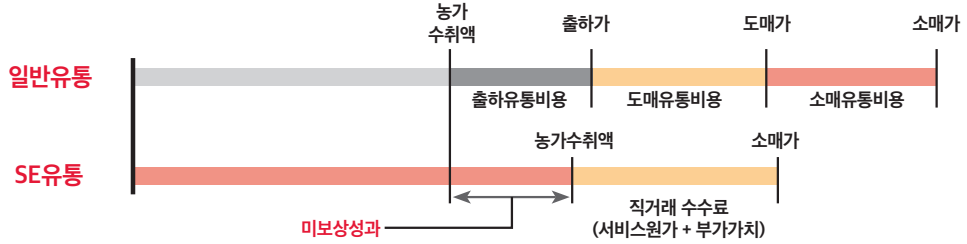
<표 2-7> 성과 창출방식과 세부영역

성과 창출방식		세부영역
추가 가격 지불	소농의 소득 증진	소농거래
	해외 소농의 소득 증진	공정무역 - 농산물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액 증대	클라우드펀딩 - 기부형
추가 거래 기회	취약국가 생산자의 소득 증진	공정무역 - 비농산물
	취약지역 주민 소득 증진	공정여행 - 해외, 국내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액 증대	클라우드펀딩 - 리워드형, 기부형
	창업지원 등을 통한 소득 증진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취약생산자의 추가 거래 기회 제공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취약예술인의 소득 증진	문화예술 자산보호
공공 시민자산 증대	취약생산자 소득 증진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신진작가와와 작품 거래	문화예술 자산보호
	공익활동 지원	비영리 조직 지원
	공공예산 효율성 증대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1. 소농거래

외부공정	소농거래																		
지표개요	국내 소농을 위해 기존 거래처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취약 소농의 소득을 증진시킨 성과																		
측정원리 및 산식	<p>(1) 측정원리 해당 공급자가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거래 채널 대비 해당 사회적기업이 공급자에게 추가적으로 더 높게 지불한 비용의 총액으로 측정하며 관련 외부 지원금은 제외함. 직거래, 계약재배, 크라우드형 직거래 등 비즈니스 모델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함</p> <p>(2) 측정산식 2015년 이전 사회적기업이 추가적으로 지불한 가격 × 총 거래량 - 외부지원금 = (기업의 농산물 구매가격 - 기존 일반 거래처의 구매가격) × 총 거래량 2016년 이후 = (기업의 거래가격 × 거래량) × 농업유통비비율 - 외부지원금</p>																		
주요개념 및 범주	<p>(1) 농업유통비비율 = $\frac{\text{출하유통비용}}{\text{생산자 수취액 비용}} \times \text{출하유통비용}$</p> <p>(2) 소농의 범위: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소농직불금 지급요건 기준, 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p>																		
Proxy	<p>(1) 농업유통비비율: 농산물 유통정보(KAMIS)의 유통비용 정보를 proxy로 채택함. 이를 바탕으로 얻은 생산자 수취액 비용, 출하유통비용을 DB화하여 농업유통비비율 proxy를 얻어 적용함</p> <p>(2) 국내 소농비율: 사회적기업이 개별 소농의 증빙을 취합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국내 농가 중 소농비율을 구해 국내 소농비율 proxy로 적용함(통계청 - 농림어업조사 - 경작면적 2ha 미만의 비율)</p>																		
참고사항	<p>(1) 소농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급 기준의 면적과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소농으로 인정함 - 기준값: '통산 논농사의 경우 경작면적이 2ha 미만인 경우, 농가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로 두었고, 이를 조사하기 어려우니 국내 농가 중 소농의 비율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경작면적(2ha 미만) 및 연소득(3천만원 이하) 기준 농가비율을 proxy로 적용함 - 법인농은 측정제외가 기본이나 예외 존재(개별 문의) <p><표 2-8>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소농직불금 지급 요건</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기준</th> </tr> </thead> <tbody> <tr> <td>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td> <td>0.5ha 이하</td> </tr> <tr> <td>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td> <td>1.55ha 미만</td> </tr> <tr> <td>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td> <td>3년 이상</td> </tr> <tr> <td>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td> <td>3년 이상</td> </tr> <tr> <td>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td> <td>2,000만원 미만</td> </tr> <tr> <td>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td> <td>4,500만원 미만</td> </tr> <tr> <td>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td> <td>5,600만원 미만</td> </tr> <tr> <td>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td> <td>3,800만원 미만</td> </tr> </tbody> </table> <p>*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p>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2) 출하유통비 적용의 이유



<그림 2-4> 농산물 가격의 구성요소 및 사회적기업 유통시 성과 측정

참고사항

- 2015년 일반 농산물 유통시장(1)과 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기업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유통시장(2)을 비교하면 위와 같음. (1)과 (2)를 종합, 비교 검토한 결과 (2)는 생산자와 산지조직이 부담했던 출하유통비용을 부담해주거나 전체 가격의 출하유통비율(작물에 따라 다름) 수준으로 거래가를 추가 지불한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2016년 이후 사회적기업이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업생산자가 추가적으로 얻은 생산자 편익을 사회성으로 측정함

(3) 제한적 적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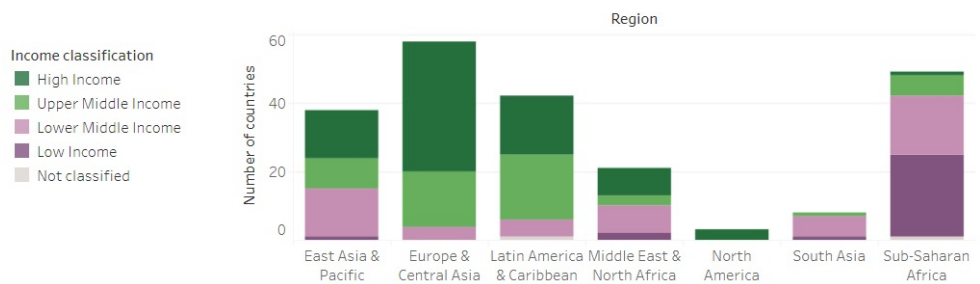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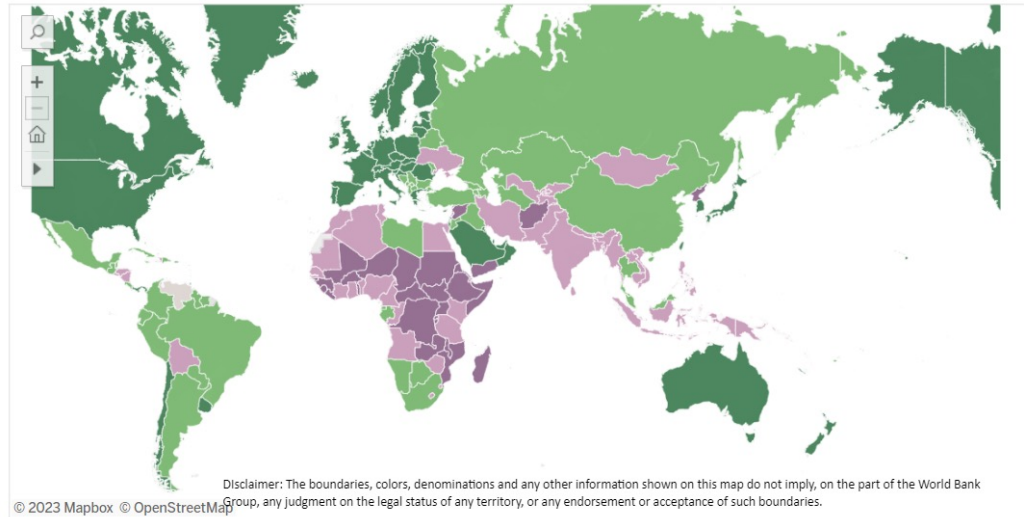
-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작물의 범주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가공품인 경우 (개인농만 가능)

(4) 증빙자료 : 거래 가격 비교 자료(통계값 또는 농가가 제시하는 유통거래증빙)

2. 공정무역 - 농산물

외부공정	공정무역 - 농산물												
지표개요	해외 소농에 기존 거래처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취약 소농의 소득을 증진시킨 성과												
측정원리 및 산식	<p>(1) 측정원리 해당 공급자가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거래 채널 대비 해당 사회적기업이 공급자에게 추가적으로 더 높게 지불한 비용의 총액으로 측정하며 관련 외부지원금은 제외함. 공정무역은 시장경쟁의 절대적 약자인 생산자와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고 경제적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도와 취약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공정무역의 성과지표는 저개발국가의 취약 생산자에 한하여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지원 성과를 반영함</p> <p>(2) 측정산식 사회적기업이 추가적으로 지불한 가격 × 총 거래량 - 외부지원금 = (사회적기업의 농산물 구매가격 - 기존 일반 거래처의 구매가격) × 총 거래량 - 외부지원금</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2-5> 공정무역(농산물)성과 측정원리</p> </div>												
주요개념 및 범주	(1) 저개발국 기준 :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2) 운송조건의 종류 : 공장인도(EXW), 본선인도(FOB), 관세지급인도(DDP)												
Proxy	<p>(1) 기존 일반 거래처의 구매가격 - 해당 농산물의 무역시장에서의 평균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선물거래소(Intercontinental Exchange),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의 Trademap, 또는 세계커피기구(ICO)와 같은 국제적인 농산물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활용함 - 사회적기업이 농업생산자(수출업자)와 계약상에 기존 거래가의 특정 비율(또는 액수) 이상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계약에 근거해 시장가격 추정 가능함</p> <p>(2) 운송조건에 따른 추가가격지불분 - 운송방식은 인도조건과 운송비 부담 범위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이 중 일반 무역시장의 일반적 운송방식인 관세지급인도(DDP) 외에 해당 사회적기업이 공장인도(EXW) 또는 본선인도(FOB) 방식을 취할 경우 운송비 부담분도 추가적으로 지불한 가격으로 보고 사회성과에 반영함</p> <p><표 2-9> 공정무역시 운송조건의 유형과 매수자의 비용부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인도 조건</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운송비 부담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공장인도 EXW (Ex Works)</td> <td>화물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무역거래 조건</td> <td>운송비 등 수출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 수출업자의 의무가 최소</td> </tr> <tr> <td>본선인도 FOB (Free on Board)</td> <td>수출업자가 약속한 화물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td> <td>수출업자는 화물이 현장에서부터 본선 선상에 인도될 때까지의 제비용(諸費用)과 위험을 부담, 수입상은 그 이후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착항(수입항)까지의 제비용과 위험을 부담</td> </tr> <tr> <td>관세지급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td> <td>입국 내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도착시키는 조건이며, 이때 수입국 내의 관세, 부가세 및 수입에 드는 모든 비용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조건</td> <td>수출 절차 시작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 수입업자의 의무가 최소</td> </tr> </tbody> </table>	구분	인도 조건	운송비 부담 범위	공장인도 EXW (Ex Works)	화물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무역거래 조건	운송비 등 수출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 수출업자의 의무가 최소	본선인도 FOB (Free on Board)	수출업자가 약속한 화물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	수출업자는 화물이 현장에서부터 본선 선상에 인도될 때까지의 제비용(諸費用)과 위험을 부담, 수입상은 그 이후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착항(수입항)까지의 제비용과 위험을 부담	관세지급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입국 내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도착시키는 조건이며, 이때 수입국 내의 관세, 부가세 및 수입에 드는 모든 비용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조건	수출 절차 시작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 수입업자의 의무가 최소
구분	인도 조건	운송비 부담 범위											
공장인도 EXW (Ex Works)	화물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무역거래 조건	운송비 등 수출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 수출업자의 의무가 최소											
본선인도 FOB (Free on Board)	수출업자가 약속한 화물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	수출업자는 화물이 현장에서부터 본선 선상에 인도될 때까지의 제비용(諸費用)과 위험을 부담, 수입상은 그 이후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착항(수입항)까지의 제비용과 위험을 부담											
관세지급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입국 내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도착시키는 조건이며, 이때 수입국 내의 관세, 부가세 및 수입에 드는 모든 비용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조건	수출 절차 시작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 수입업자의 의무가 최소											

(1)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국가 리스트
(참고: <https://blogs.worldbank.org/opendata/new-world-bank-country-classifications-income-level-2022-2023>)



<그림 2-6> GNI 기준 소득 그룹별 국가 분포 (출처: World Bank)

Lower middle income											
ALGERIA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OLIVIA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OMOROS	CONGO, REP.	
COTE D'IVOIRE	DJIBOUTI	EGYPT, ARAB REP.	ESWATINI	GHANA	GUINEA	HAITI	HONDURAS	INDIA	IRAN, ISLAMIC REP.	JORDAN	KENYA
KIRIBATI	KYRGYZ REPUBLIC	LAO PDR	LEBANON	LESOTHO	MAURITANIA	MICRONESIA, FED. STS.	MONGOLIA	MOROCCO	MYANMAR	NEPAL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OLOMON ISLANDS	SRI LANKA		
TAJIKISTAN	TANZANIA	TIMOR-LESTE	TUNISIA	UKRANIE	UZBEKISTAN	VANUATU	VIETNAM	ZAMBIA	ZIMBABWE		
Low income											
AFGHANISTAN	BURKINA FASO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DEM. REP.	ERITREA	ETHIOPIA	GAMBIA, THE			
GUINEA-BISSAU	KOREA, DEM. PEOPLE'S REP	LIBERIA	MADAGASCAR	MALAWI	ALI	MOZAMBIQUE	NIGER	RWANDA	SIERRA LEONE		
SOMALIA	SOUTH SUDAN	SUDAN	SYRIAN ARAB REPUBLIC	TOGO	UGANDA	TEMEN, REP.					

<그림 2-7>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 국가 (2022-2023 기준)

참고사항

3. 공정무역 - 비농산물

외부공정	공정무역 - 비농산물																																																																																
지표개요	해외 생산자/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거래기회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약생산자/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킨 성과																																																																																
측정원리 및 산식	<p>(1) 측정원리 유통시장 자체가 없거나 부족한 저개발국의 영세 상인 및 공장 등을 지원하여 빈곤층의 소득 개선에 기여, 이들이 경제적 주체로서 존속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따라서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거래 대비 사회적기업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구매한 물량의 거래액에서의 부가가치분을 측정함</p> <p>(2) 측정산식 (연간 총 거래액 × 해당 생산조직의 부가가치율) - 외부지원금</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2-8> 공정무역(비농산물)성과 측정원리</p>																																																																																
주요개념 및 범주	저개발국 기준 :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국가																																																																																
Proxy	<p>부가가치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조직의 협조를 얻어 재료원가율(인건비 제외) 또는 부가가치율 정보를 받아 산식에 적용함 - 위 방식이 어려운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DB 활용 																																																																																
참고사항	<p>(1)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국가 리스트</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9f9f9;"> <p>Lower middle income</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 <tr> <td>ALGERIA</td><td>ANGOLA</td><td>BANGLADESH</td><td>BENIN</td><td>BHUTAN</td><td>BOLIVIA</td><td>CABO VERDE</td><td>CAMBODIA</td><td>CAMEROON</td><td>COMOROS</td><td>CONGO, REP.</td> </tr> <tr> <td>COTE D'IVOIRE</td><td>DJIBOUTI</td><td>EGYPT, ARAB REP.</td><td>ESWATINI</td><td>GHANA</td><td>GUINEA</td><td>HAITI</td><td>HONDURAS</td><td>INDIA</td><td>IRAN, ISLAMIC REP.</td><td>JORDAN</td><td>KENYA</td> </tr> <tr> <td>KIRIBATI</td><td>KYRGYZ REPUBLIC</td><td>LAO PDR</td><td>LEBANON</td><td>LESOTHO</td><td>MAURITANIA</td><td>MICRONESIA, FED. STS.</td><td>MONGOLIA</td><td>MOROCCO</td><td>MYANMAR</td><td>NEPAL</td> </tr> <tr> <td>NICARAGUA</td><td>NIGERIA</td><td>PAKISTAN</td><td>PAPUA NEW GUINEA</td><td>PHILIPPINES</td><td>SAMOA</td><td>SAO TOME AND PRINCIPE</td><td>SENEGAL</td><td>SOLOMON ISLANDS</td><td>SRI LANKA</td> </tr> <tr> <td>TAJIKISTAN</td><td>TANZANIA</td><td>TIMOR-LESTE</td><td>TUNISIA</td><td>UKRAINE</td><td>UZBEKISTAN</td><td>VANUATU</td><td>VIETNAM</td><td>ZAMBIA</td><td>ZIMBABWE</td> </tr> </table> <p>Low income</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 <tr> <td>AFGHANISTAN</td><td>BURKINA FASO</td><td>BURUNDI</td><td>CENTRAL AFRICAN REPUBLIC</td><td>CHAD</td><td>CONGO, DEM. REP.</td><td>ERITREA</td><td>ETHIOPIA</td><td>GAMBIA, THE</td> </tr> <tr> <td>GUINEA-BISSAU</td><td>KOREA, DEM. PEOPLE'S REP.</td><td>LIBERIA</td><td>MADAGASCAR</td><td>MALAWI</td><td>ALI</td><td>MOZAMBIQUE</td><td>NIGER</td><td>RWANDA</td><td>SIERRA LEONE</td> </tr> <tr> <td>SOMALIA</td><td>SOUTH SUDAN</td><td>SUDAN</td><td>SYRIAN ARAB REPUBLIC</td><td>TOGO</td><td>UGANDA</td><td>TEMEN, REP.</td> </tr> </table> </div>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2-9>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 국가 (2022-2023 기준)</p> <p>(2) 예외 : 공정무역 유통상(도매상)을 통해 구입해 유통하는 경우 공정무역 도매상(Wholesaler)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목표집단인 취약생산자에게 소득증진의 편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성과 측정대상에서 제외됨</p>	ALGERIA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OLIVIA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OMOROS	CONGO, REP.	COTE D'IVOIRE	DJIBOUTI	EGYPT, ARAB REP.	ESWATINI	GHANA	GUINEA	HAITI	HONDURAS	INDIA	IRAN, ISLAMIC REP.	JORDAN	KENYA	KIRIBATI	KYRGYZ REPUBLIC	LAO PDR	LEBANON	LESOTHO	MAURITANIA	MICRONESIA, FED. STS.	MONGOLIA	MOROCCO	MYANMAR	NEPAL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OLOMON ISLANDS	SRI LANKA	TAJIKISTAN	TANZANIA	TIMOR-LESTE	TUNISIA	UKRAINE	UZBEKISTAN	VANUATU	VIETNAM	ZAMBIA	ZIMBABWE	AFGHANISTAN	BURKINA FASO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DEM. REP.	ERITREA	ETHIOPIA	GAMBIA, THE	GUINEA-BISSAU	KOREA, DEM. PEOPLE'S REP.	LIBERIA	MADAGASCAR	MALAWI	ALI	MOZAMBIQUE	NIGER	RWANDA	SIERRA LEONE	SOMALIA	SOUTH SUDAN	SUDAN	SYRIAN ARAB REPUBLIC	TOGO	UGANDA	TEMEN, REP.
ALGERIA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OLIVIA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OMOROS	CONGO, REP.																																																																							
COTE D'IVOIRE	DJIBOUTI	EGYPT, ARAB REP.	ESWATINI	GHANA	GUINEA	HAITI	HONDURAS	INDIA	IRAN, ISLAMIC REP.	JORDAN	KENYA																																																																						
KIRIBATI	KYRGYZ REPUBLIC	LAO PDR	LEBANON	LESOTHO	MAURITANIA	MICRONESIA, FED. STS.	MONGOLIA	MOROCCO	MYANMAR	NEPAL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OLOMON ISLANDS	SRI LANKA																																																																								
TAJIKISTAN	TANZANIA	TIMOR-LESTE	TUNISIA	UKRAINE	UZBEKISTAN	VANUATU	VIETNAM	ZAMBIA	ZIMBABWE																																																																								
AFGHANISTAN	BURKINA FASO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DEM. REP.	ERITREA	ETHIOPIA	GAMBIA, THE																																																																									
GUINEA-BISSAU	KOREA, DEM. PEOPLE'S REP.	LIBERIA	MADAGASCAR	MALAWI	ALI	MOZAMBIQUE	NIGER	RWANDA	SIERRA LEONE																																																																								
SOMALIA	SOUTH SUDAN	SUDAN	SYRIAN ARAB REPUBLIC	TOGO	UGANDA	TEMEN, REP.																																																																											

4. 공정여행 - 해외, 국내

외부공정	공정여행 - 해외, 국내																																																																																						
지표개요	경제적 생산기회가 많지 않은 취약국가 또는 지역에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대자본과 무관한 현지 주민 생산자와 지역 경제에 기여한 성과를 측정																																																																																						
측정원리 및 산식	<p>(1) 측정원리 공정여행은 취약지역의 현지에 비용을 직접 유입시키고 지역 문화를 존중, 환경영향을 최소화 함. 이는 해당지역과 영세 생산자에게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비농업 공정무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거래의 부가가치전액을 성과로 인정함. 그런데 여행 관련 취약 생산자의 직접 부가가치율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어려우므로 주요 공정여행 국가의 부가가치율 및 우리나라 관련 업종(숙박업, 외식업, 기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을 DB화하여 적용함</p> <p>(2) 측정산식 (취약지역과의 연간 총 거래액 × 해당 생산조직(국가)의 부가가치율) - 외부지원금</p>																																																																																						
주요개념 및 범주	<p>(1) 공정여행: 여행객과 지역주민간 공정한 거래를 통해 여행 현지에 여행비용이 직접 유입되는 소비를 지향하며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여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p> <p>(2) 취약생산자: 숙박, 음식, 기타서비스 등 관광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지역의 연 매출 3억 이하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p> <p>(3) 취약국가: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국가</p>																																																																																						
Proxy	<p>부가가치율</p> <p>- 해외: 공정여행 서비스 부가가치율</p> <p>- 국내: $\frac{\text{매출과표} - \text{매입과표}}{\text{매출과표}} \times 100$ (출처: 부가가치율 현황 「국세통계」, 2005~, 국세청)</p>																																																																																						
참고사항	<p>(1)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국가 리스트</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9f9f9;"> <p>Lower middle income</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 <tr><td>ALGERIA</td><td>ANGOLA</td><td>BANGLADESH</td><td>BENIN</td><td>BHUTAN</td><td>BOLIVIA</td><td>CABO VERDE</td><td>CAMBODIA</td><td>CAMEROON</td><td>COMOROS</td><td>CONGO, REP.</td></tr> <tr><td>COTE D'IVOIRE</td><td>DJIBOUTI</td><td>EGYPT, ARAB REP.</td><td>ESWATINI</td><td>GHANA</td><td>GUINEA</td><td>HAITI</td><td>HONDURAS</td><td>INDIA</td><td>IRAN, ISLAMIC REP.</td><td>JORDAN</td><td>KENYA</td></tr> <tr><td>KIRIBATI</td><td>KYRGYZ REPUBLIC</td><td>LAO PDR</td><td>LEBANON</td><td>LESOTHO</td><td>MAURITANIA</td><td>MICRONESIA, FED. STS.</td><td>MONGOLIA</td><td>MOROCCO</td><td>MYANMAR</td><td>NEPAL</td></tr> <tr><td>NICARAGUA</td><td>NIGERIA</td><td>PAKISTAN</td><td>PAPUA NEW GUINEA</td><td>PHILIPPINES</td><td>SAMOA</td><td>SAO TOME AND PRINCIPE</td><td>SENEGAL</td><td>SOLOMON ISLANDS</td><td>SRI LANKA</td><td></td></tr> <tr><td>TAJIKISTAN</td><td>TANZANIA</td><td>TIMOR-LESTE</td><td>TUNISIA</td><td>UKRAINE</td><td>UZBEKISTAN</td><td>VANUATU</td><td>VIETNAM</td><td>ZAMBIA</td><td>ZIMBABWE</td><td></td></tr> </table> <p>Low income</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 <tr><td>AFGHANISTAN</td><td>BURKINA FASO</td><td>BURUNDI</td><td>CENTRAL AFRICAN REPUBLIC</td><td>CHAD</td><td>CONGO, DEM. REP.</td><td>ERITREA</td><td>ETHIOPIA</td><td>GAMBIA, THE</td><td></td></tr> <tr><td>GUINEA-BISSAU</td><td>KOREA, DEM. PEOPLE'S REP.</td><td>LIBERIA</td><td>MADAGASCAR</td><td>MALAWI</td><td>ALI</td><td>MOZAMBIQUE</td><td>NIGER</td><td>RWANDA</td><td>SIERRA LEONE</td></tr> <tr><td>SOMALIA</td><td>SOUTH SUDAN</td><td>SUDAN</td><td>SYRIAN ARAB REPUBLIC</td><td>TOGO</td><td>UGANDA</td><td>TEMEN, REP.</td><td></td><td></td><td></td></tr> </table> </div> <p><그림 2-10>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 국가 (2022-2023 기준)</p> <p>(2) 증빙자료: 거래금액 및 거래량 등 총 거래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거래처의 영세성 증빙자료</p> <p>(3) 위탁 사업의 경우, 위탁자와 위탁수행자 간 기여율을 적용하여 성과를 측정</p>	ALGERIA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OLIVIA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OMOROS	CONGO, REP.	COTE D'IVOIRE	DJIBOUTI	EGYPT, ARAB REP.	ESWATINI	GHANA	GUINEA	HAITI	HONDURAS	INDIA	IRAN, ISLAMIC REP.	JORDAN	KENYA	KIRIBATI	KYRGYZ REPUBLIC	LAO PDR	LEBANON	LESOTHO	MAURITANIA	MICRONESIA, FED. STS.	MONGOLIA	MOROCCO	MYANMAR	NEPAL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OLOMON ISLANDS	SRI LANKA		TAJIKISTAN	TANZANIA	TIMOR-LESTE	TUNISIA	UKRAINE	UZBEKISTAN	VANUATU	VIETNAM	ZAMBIA	ZIMBABWE		AFGHANISTAN	BURKINA FASO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DEM. REP.	ERITREA	ETHIOPIA	GAMBIA, THE		GUINEA-BISSAU	KOREA, DEM. PEOPLE'S REP.	LIBERIA	MADAGASCAR	MALAWI	ALI	MOZAMBIQUE	NIGER	RWANDA	SIERRA LEONE	SOMALIA	SOUTH SUDAN	SUDAN	SYRIAN ARAB REPUBLIC	TOGO	UGANDA	TEMEN, REP.			
ALGERIA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OLIVIA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OMOROS	CONGO, REP.																																																																													
COTE D'IVOIRE	DJIBOUTI	EGYPT, ARAB REP.	ESWATINI	GHANA	GUINEA	HAITI	HONDURAS	INDIA	IRAN, ISLAMIC REP.	JORDAN	KENYA																																																																												
KIRIBATI	KYRGYZ REPUBLIC	LAO PDR	LEBANON	LESOTHO	MAURITANIA	MICRONESIA, FED. STS.	MONGOLIA	MOROCCO	MYANMAR	NEPAL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OLOMON ISLANDS	SRI LANKA																																																																														
TAJIKISTAN	TANZANIA	TIMOR-LESTE	TUNISIA	UKRAINE	UZBEKISTAN	VANUATU	VIETNAM	ZAMBIA	ZIMBABWE																																																																														
AFGHANISTAN	BURKINA FASO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DEM. REP.	ERITREA	ETHIOPIA	GAMBIA, THE																																																																															
GUINEA-BISSAU	KOREA, DEM. PEOPLE'S REP.	LIBERIA	MADAGASCAR	MALAWI	ALI	MOZAMBIQUE	NIGER	RWANDA	SIERRA LEONE																																																																														
SOMALIA	SOUTH SUDAN	SUDAN	SYRIAN ARAB REPUBLIC	TOGO	UGANDA	TEMEN, REP.																																																																																	

5. 클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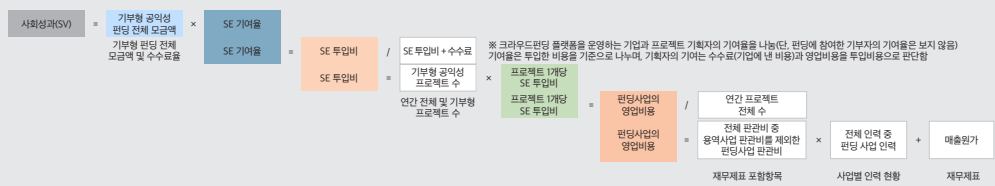
외부공정	클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	--------------------

지표개요	클라우드펀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모금 또는 거래에 기여한 성과
------	------------------------------------

5-1. 기부형

(1) 측정원리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우회지표로 클라우드펀딩 사회적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모금 또는 거래에 기여한 성과를 측정함. 클라우드펀딩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과 프로젝트 기획자의 기여율은 투입비용 기준으로 나누며, 기획자의 기여는 수수료(기업에 낸 비용)만큼을 투입비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사회적기업의 기여분만을 측정함



<그림 2-11> 클라우드펀딩(기부형)성과 측정원리

(2) 측정산식

기부형 펀딩 전체 모금액 x SE기여율 - 외부지원금

$$= \text{기부형 펀딩 전체 모금액} \times \frac{\text{SE 투입비용}}{\text{SE투입비용} + \text{수수료 금액}} - \text{외부지원금}$$

$$= \text{기부형 펀딩 전체 모금액} \times \frac{\text{기부형 프로젝트 수} \times \text{프로젝트 1개당 SE 투입비용}}{(\text{기부형 프로젝트 수} \times \text{프로젝트 1개당 SE 투입비용}) + \text{수수료 금액}} - \text{외부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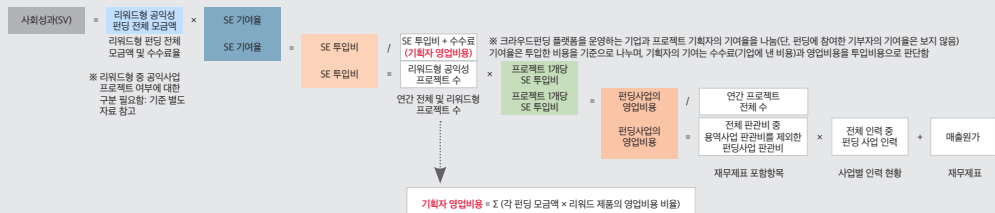
$$= \text{기부형 펀딩 전체 모금액} \times \frac{\text{기부형 프로젝트 수} \times \frac{\text{판당사업의 영업비용}}{\text{연간 프로젝트 수}}}{\left(\text{기부형 프로젝트 수} \times \frac{\text{판당사업의 영업비용}}{\text{연간 프로젝트 수}} \right) + \text{수수료 금액}} - \text{외부지원금}$$

측정원리 및 산식

5-2. 리워드형

(1) 측정원리

공익사업을 위한 자원조달성과에 대한 우회지표로 클라우드 펀딩 사회적기업이 공익 사업을 위한 모금 또는 거래에 기여한 성과를 측정함. 보상으로 제공할 제품/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 모금액에서 보상품 제공을 위해 사용한 총 생산비용(=리워드 제공을 위한 투입비용)과 수수료를 제외한 부가가치 부분(순 모금수익)을 사회적기업의 기여분이라 판단하여 측정함



<그림 2-12> 클라우드펀딩(리워드형)성과 측정원리

<p>측정원리 및 산식</p>	<p>(2) 측정산식</p> <p>리워드형 펀딩 전체 모금액 x SE기여율 - 외부지원금</p> $= \frac{\text{리워드형 펀딩 전체 모금액}}{\text{SE 투입비용}} \times \frac{\text{SE 투입비용}}{\text{SE투입비용} + \text{수수료 금액} + \text{기획자 영업비용}} - \text{외부지원금}$ $= \frac{\text{리워드형 펀딩 전체 모금액}}{\text{리워드형 프로젝트 수} + \text{수수료 금액} + \text{기획자 영업비용}} \times \frac{\text{리워드형 프로젝트 수} \times \text{프로젝트 1개당 SE 투입비용}}{\text{리워드형 프로젝트 수} + \text{수수료 금액} + \text{기획자 영업비용}} - \text{외부지원금}$ $= \frac{\text{리워드형 펀딩 전체 모금액}}{\left(\frac{\text{리워드형 프로젝트 수} \times \text{펀딩사업의 영업비용}}{\text{연간 프로젝트 수}} \right) + \text{수수료 금액} + \text{기획자 영업비용}} \times \frac{\text{리워드형 프로젝트 수} \times \frac{\text{펀딩사업의 영업비용}}{\text{연간 프로젝트 수}}}{\left(\frac{\text{리워드형 프로젝트 수} \times \text{펀딩사업의 영업비용}}{\text{연간 프로젝트 수}} \right) + \text{수수료 금액} + \text{기획자 영업비용}} - \text{외부지원금}$																											
<p>Proxy</p>	<p>(1) 펀딩사업의 영업비용 = (전체 판관비 - 용역형 판관비) × $\frac{\text{펀딩사업 인력}}{\text{전체 인력}}$ + 매출원가</p> <p>(2) 용역형 판관비 = 행사비 + 여비교통비 + 협회비</p> <p>(3) 기획자 영업비용 = ∑ (각 펀딩 모금액 × 리워드 제품의 영업비용 비율)</p>																											
<p>주요개념 및 범주</p>	<p>(1)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 혹은 집단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p> <p>(2)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공익활동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금을 받는 모금 형태</p> <p>(3)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또는 공익활동에 기부자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 보장하기 위해 기부 금액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는 펀딩 방식</p>																											
<p>참고사항</p>	<p>(1) 측정대상 선정: 목표집단·공익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체 및 목적 등을 프로젝트의 공익성 기준으로 사회성과 포함여부 판단</p> <p><표 2-10> 공익성 판단 기준</p> <table border="1"> <tr> <td>1</td> <td>동시대의 특정 사회에 속하는</td> <td>국제적, 국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차이와 변화 존재 시대성, 지역성 고려</td> </tr> <tr> <td>2</td> <td>구성원이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td> <td>개인뿐 아니라 커뮤니티, 지구환경 포함함</td> </tr> <tr> <td>3</td> <td>원인과 해결방법이 구조적/집단적이고</td> <td>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이며, 다수 구성원이 문제로 인식하며 집단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td> </tr> <tr> <td>4</td> <td>직접적 편익이 발생해야 함</td> <td>사회문제의 당사자인 목표집단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해야 함 일반 기업의 자본, 설비 마련, 투자형 펀드 등 수혜계층에게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td> </tr> <tr> <td>5</td> <td>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조직 지원</td> <td>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과 NGO,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은 사회문제/공익성을 인정함 (※ 본 프로젝트 공익성 판단에서의 추가 원칙)</td> </tr> </table> <p><표 2-11> 프로젝트 사회성과 포함 여부 판단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구분</th> <th>포함 여부</th> <th>상세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td> <td>모두 포함</td> <td>(1)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획자이거나 (2) 해당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3) 해당 조직 지원을 위해 펀딩 후원금을 (거의 전액) 사용하는 경우 ※ 단, 사회문제 당사자인 목표집단(수혜계층)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불명확한 소셜미션의 조직을 설립 예정인 경우이거나, 관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인 경우는 사회성과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td> </tr> <tr> <td>2</td> <td>취약계층 지원</td> <td>모두 포함</td> <td>(1) 펀딩 목적 또는 제품/서비스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것이거나 (2) 후원금 사용 계획이 (거의 전액) 취약계층 지원 목적인 경우 ※ 다만, 후원금의 사용 계획이 대부분 영리 목적(제품 생산 등)이고, 공익 목적은 일부 후원(수익금의 10~20% 수준)인 경우는, 펀딩 모금액 중 실제 공익 목적 사용 금액 및 비율을 모두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함</td> </tr> </tbody> </table>	1	동시대의 특정 사회에 속하는	국제적, 국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차이와 변화 존재 시대성, 지역성 고려	2	구성원이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개인뿐 아니라 커뮤니티, 지구환경 포함함	3	원인과 해결방법이 구조적/집단적이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이며, 다수 구성원이 문제로 인식하며 집단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4	직접적 편익이 발생해야 함	사회문제의 당사자인 목표집단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해야 함 일반 기업의 자본, 설비 마련, 투자형 펀드 등 수혜계층에게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5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조직 지원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과 NGO,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은 사회문제/공익성을 인정함 (※ 본 프로젝트 공익성 판단에서의 추가 원칙)	No.	구분	포함 여부	상세 기준	1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	모두 포함	(1)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획자이거나 (2) 해당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3) 해당 조직 지원을 위해 펀딩 후원금을 (거의 전액) 사용하는 경우 ※ 단, 사회문제 당사자인 목표집단(수혜계층)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불명확한 소셜미션의 조직을 설립 예정인 경우이거나, 관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인 경우는 사회성과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	2	취약계층 지원	모두 포함	(1) 펀딩 목적 또는 제품/서비스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것이거나 (2) 후원금 사용 계획이 (거의 전액) 취약계층 지원 목적인 경우 ※ 다만, 후원금의 사용 계획이 대부분 영리 목적(제품 생산 등)이고, 공익 목적은 일부 후원(수익금의 10~20% 수준)인 경우는, 펀딩 모금액 중 실제 공익 목적 사용 금액 및 비율을 모두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함
1	동시대의 특정 사회에 속하는	국제적, 국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차이와 변화 존재 시대성, 지역성 고려																										
2	구성원이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개인뿐 아니라 커뮤니티, 지구환경 포함함																										
3	원인과 해결방법이 구조적/집단적이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이며, 다수 구성원이 문제로 인식하며 집단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4	직접적 편익이 발생해야 함	사회문제의 당사자인 목표집단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해야 함 일반 기업의 자본, 설비 마련, 투자형 펀드 등 수혜계층에게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5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조직 지원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과 NGO,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은 사회문제/공익성을 인정함 (※ 본 프로젝트 공익성 판단에서의 추가 원칙)																										
No.	구분	포함 여부	상세 기준																									
1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	모두 포함	(1)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획자이거나 (2) 해당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3) 해당 조직 지원을 위해 펀딩 후원금을 (거의 전액) 사용하는 경우 ※ 단, 사회문제 당사자인 목표집단(수혜계층)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불명확한 소셜미션의 조직을 설립 예정인 경우이거나, 관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인 경우는 사회성과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																									
2	취약계층 지원	모두 포함	(1) 펀딩 목적 또는 제품/서비스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것이거나 (2) 후원금 사용 계획이 (거의 전액) 취약계층 지원 목적인 경우 ※ 다만, 후원금의 사용 계획이 대부분 영리 목적(제품 생산 등)이고, 공익 목적은 일부 후원(수익금의 10~20% 수준)인 경우는, 펀딩 모금액 중 실제 공익 목적 사용 금액 및 비율을 모두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함																									

참고사항

3	공익 캠페인	조건부	(1) 후원금 사용 목적이 공익(비영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거나 (2) 관련 비영리단체가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거의 전액) 후원하는 경우 ※ 단, 위의 두 가지가 아닌 경우 공익 캠페인 지원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4	환경 문제 해결	모두 포함	(1) 펀딩 목적 또는 제품/서비스의 기능에 환경 문제 해결 성과가 있거나 (2) 후원금 사용 계획이 환경 문제 해결에 있는 경우 ※ 단, 제품/서비스에 환경 문제 해결 기능이 있어야 함 (즉, 과정과 효과성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함)
5	안전 문제 해결	조건부	국가 및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안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문제 해결 성과로 포함함 ※ 그러나, 개인의 책임 또는 사건사고로 발생하는 안전 문제 해결은 성과 대상으로 포함하지 아니함
6	소농지원 (생산자지원)	조건부	'로컬푸드 소비 및 유통'은 이미 시장화 되어 있으므로 (로컬푸드, 국산 유기농 식재료의 시장화), 로컬푸드를 사거나 먹는 것 자체는 사회성과 대상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다만, 소농 생산자의 농산물을 더 나은 유통 조건으로 구매하거나 소비하며 지원하는 경우는 사회성과 대상으로 판단함 외부공정-소농거래성과 측정 시에는 대상자의 소농 여부 사실(소득 및 경력지)을 확인하나,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미포함하였으나, 다만 프로젝트의 기획자가 곧 생산자인 경우, 중간 유통 구조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므로 편익(소득)이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제공된다고 판단하고, '수확자=생산자=기획자=판매자' 인 프로젝트의 경우에 한하여 소농 생산자 지원 성과로 포함함.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간 단계의 유통 비율에 따른 기여율을 구분해야 명확히 측정이 가능하므로, 제외함 ※ 단, 축산식품, 2차/3차 가공식품 등은 소농인 생산자가 직접 기획 및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성과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음
7	공정여행 (지역관광)	조건부	'낙후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취약성을 입증 및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포함하였으나, 위와 유사한 원리로 프로젝트의 기획자가 해당 지역의 주민 단체 및 지역공동체조직인 경우에는, 중간 단계 없이 지역 주민에게 직접 경제적 편익을 끼치는 구조로, '지역 주민 또는 지역 주민 조직=기획자=판매자' 인 경우에 한하여 공정여행 지원 성과로 포함함 ※ 단, 해당 지역의 주민 조직과 직접 관련성 없이, 일반 여행사(공정여행사, 로컬투어기업, 여행기획사 등에서 기획, 판매하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의 부가가치 비율 및 기여율을 구분해야 하므로, 제외함
8	문화-영화, 서적,공연	미포함	단편영화 제작, 공연 제작, 책 출판 지원이 사회서비스 대상은 아니므로 미포함함 (전년도와 동일 원칙)
9	기타 (미포함 대상)	미포함	아티스트 지원, 전통예술계승, 일반인 대상 건강 증진, 취약계층 외 일반 아동 대상 교육, 저소득층 외 일반 청년 대상 지원, 미혼모 다문화 등 외 일반 부모 대상 육아 지원 등은 사회문제 정의 원칙에 따라 사회서비스 대상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외부공정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지표개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산조직을 직접 만들거나 창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을 증진시킨 성과
측정산식	<p>(1) 측정원리 사회적기업이 일정한 교육과 적극적인 창업 준비 지원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소득을 증진시킨 성과로, 해당 근로자가 과거 취약한 노동상태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여 늘어난 소득 수준만큼을 성과로 측정</p> <p>(2) 측정산식 새로운 경제조직의 부가가치액 - 참여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이전 소득 - 외부지원금 = (새로운 경제조직의 총 매출 × 부가가치율) -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이전 소득 - 외부지원금</p>
Proxy	<p>(1) 새로운 경제조직의 부가가치액: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현재 소득</p> <p>(2) 부가가치액: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총 금액(매출)에서 그 생산을 위해 다른 기업에서 매입한 금액을 제외한 순 생산액</p> <p>(3) 부가가치율: $\frac{\text{매출과표} - \text{매입과표}}{\text{매출과표}} \times 100$ (출처: 부가가치율 현황 「국세통계」 2005~, 국세청)</p> <p>(4) 이전 소득: 참여 근로자들이 사회적기업과의 관계 이전 상태, 즉 '취약노동 상태'였을 때의 평균 소득</p>
주요개념 및 범주	<p>(1)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2조상 취약계층(취약계층의 범위 p.16 및 별첨 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및 예시(2023년) p.82 참고)</p> <p>(2) 생산조직: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사업단 등 취약성이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이 일치하는 조직에 한정 (도급/거래관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만 성과 측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LR SE((사회적기업 SE)) -- "사업위탁" --> ZH((자활사업단)) ZH -- "인건비" --> ZH_C((자활센터)) ZH_C -- "자활사업 위탁" --> WBU((보건복지부)) WBU -- "운영비 인건비" --> ZH_C ZH_C -- "도급비 지불" --> SE ZH_C -- "매출(수익)을 자립금으로 별도 적립 후, 자립 시 사업단에 일괄지급" --> ZH </pre> <p><그림 2-13> 자활사업단 등 생산조직 지원 및 도급 구조</p> </div>
참고사항	<p>- 이 성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창업지원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정관 및 비즈니스 전략에 내재되어야 함</p> <p>- 사회적기업 고용 후 창업을 지원한 성과는 창업단계에서의 지원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증진성과는 생산조직으로 이전한다고 보고 창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성과를 일몰 처리하여 본 지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음</p>

7.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외부공정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지표개요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취약생산자에 대한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수익)을 증진시킨 성과 단, 기업이 취약생산자와의 거래를 통해 거래 조직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경우, 그 기여분을 사회성과로 인정
측정산식	<p>(1) 측정원리 거래가격 중 생산 투입비용을 제외한 부가가치액을 사회성과로 측정</p> <p>(2) 측정산식 사회적경제조직 혹은 취약생산자와의 총 거래액 × 대상 기업(산업)의 부가가치율 - 외부지원금</p>
Proxy	부가가치율 = $\frac{(\text{매출과표} - \text{매입과표})}{\text{매출과표}} \times 100$ (출처: 부가가치율 현황「국세통계」, 2005~, 국세청)
주요개념 및 범주	<p>(1)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사업단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p> <p>(2) 취약생산자: 취약계층 기준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영세사업자 (연간 매출액 3억 이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내 확인 가능)</p>
참고사항	<p>(1)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 유통을 핵심 사명으로 삼지 않는 일반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치사슬 연계하여 생산물을 거래하거나 협의체 등에 자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여는 본 측정성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p> <p>(2) 예외: 상호호혜(내부거래)의 경우 사회성과로 측정하지 않음</p>

8. 문화예술 자산보호

외부공정	문화예술 자산보호
지표개요	예술가와의 작품활동 거래기회 제공을 통해 예술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문화예술적 자산이 증가하는 성과
측정산식	<p>(1) 측정원리 문화예술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시장 진입 기회가 부족한 신진예술인을 위해 시장을 열어주거나, 작품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가가 얻게 되는 부가가치분을 사회성으로 측정</p> <p>(2) 측정산식 신진예술인과의 거래 작품 수 × 거래가격 × 작품의 부가가치율 - 외부지원금</p>
Proxy	$\text{부가가치율} = \frac{\text{영업이익} + \text{인건비} + \text{임차료}}{\text{매출액}}$ (출처: 시도/산업/매출액규모별 현황, 「서비스업조사」, 국세청)
주요개념 및 범주	신진예술인: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고,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 예술 활동자료가 확인된 예술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진예술인예술활동증명 기준,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006_/cs01006_05.jsp)
참고사항	(1) 기업의 사명에 명시된 사회문제와 목표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측정 (2) 사회적기업이 제시하는 예술작품 거래가의 부가가치율 또는 재료비(=제작비) 비율은 사전 협의 또는 사후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

9. 비영리조직 지원

외부공정	비영리조직 지원
지표개요	기업의 수익을 사회문제를 잘 해결하는 비영리조직에 지속적으로 기부함으로써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성과
측정산식	<div style="background-color: #f5f5f5; padding: 10px;"> <p>(1) 측정원리 기부금 전액을 성과로 측정</p> <p>(2) 측정산식 사회적기업의 현금/현물 기부금(후원금) 전액</p> </div>
주요개념 및 범주	<p>• 비영리조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비영리조직으로 보며, 임의단체(비법인)은 해당하지 않음</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2-14> 비영리조직의 구분 (출처: 서울 NPO지원센터)</p>
참고사항	<p>(1) 사회적기업의 사명과 동일한 미션을 가질 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영리/공익 조직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경우에만 측정</p> <p>(2) 이와 무관한 단순 기부나 사회공헌활동은 측정대상이 아님</p> <p>(3) 기업에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기부하는 성과는 할인/무료 제공성과에서 측정하며, 현금 기부나 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해 기부한 경우(현물기부)가 이 지표에 해당</p>

10.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외부공정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지표개요	지역자원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시민 자산이 늘어나는 데 기여한 성과
측정산식	<p>(1) 측정원리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통해 기존에 투입되었어야 할 공공예산의 절감분을 성과로 측정</p> <p>(2) 측정산식 (기존 공공/비영리 영역에서의 처리비용 - 기업의 처리비용) x 기여율 - 외부지원금</p>
주요개념 및 범주	<p>(1) 기존 공공/비영리 영역에서의 처리비용: 공공예산으로 처리 시 단위당 투입되는 예산(비용)</p> <p>(2) 외부지원금: 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보조금, 지원금</p>
참고사항	공공예산에 투입되는 항목이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측정

11.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외부공정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지표개요	취약그룹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성과
측정산식	<p>(1) 측정원리 불공정 거래에 노출되어 있고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취약 그룹 특수직 근로자들이 공정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를 예방한 성과를 측정. 이에 대한 우회지표로, 계약 불이행 즉, 용역비체불로 인한 피해 비용을 측정</p> <p>(2) 측정산식 불공정 거래 예방 금액 + 소송절차비용 - 외부지원금 = (계약금액 × 체불 발생 비율 × 평균 체불 기간 × 지연 이자율) + 평균 소송 절차 비용 - 외부지원금</p>
Proxy	(1) 체불 발생 비율: 관련 통계자료 활용 (2) 평균 체불 기간: 해당 특수직 근로자의 체불기간을 확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존 구제수단 민사소송 혹은 형사소송 기간 적용) (3) 지연 이자율: 제1금융권 일반 신용대출금리 (4) 소송절차비용 = 변호사 성공보수금 + 인지액 + 송달료
주요개념 및 범주	취약그룹 특수직 근로자: 노동 조건 및 소득 규모 등에 따라 사회적 보호의 필요가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모든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를 특수직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음

IV. 환경성과

환경성과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통해 자원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성과이다.

자원소비 절감성과: 재활용을 통해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성과

환경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하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유한한 자원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의 고갈을 줄인 성과를 의미한다. 유한자원은 비재생재료, 에너지, 용수 등을 지칭하며, 본 성과는 개별 자원의 소비를 줄인 양에 해당 자원에 대한 환경가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별자원에 대한 환경가치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해당 자원에 대한 미래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무수한 자원의 미래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값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자원의 현재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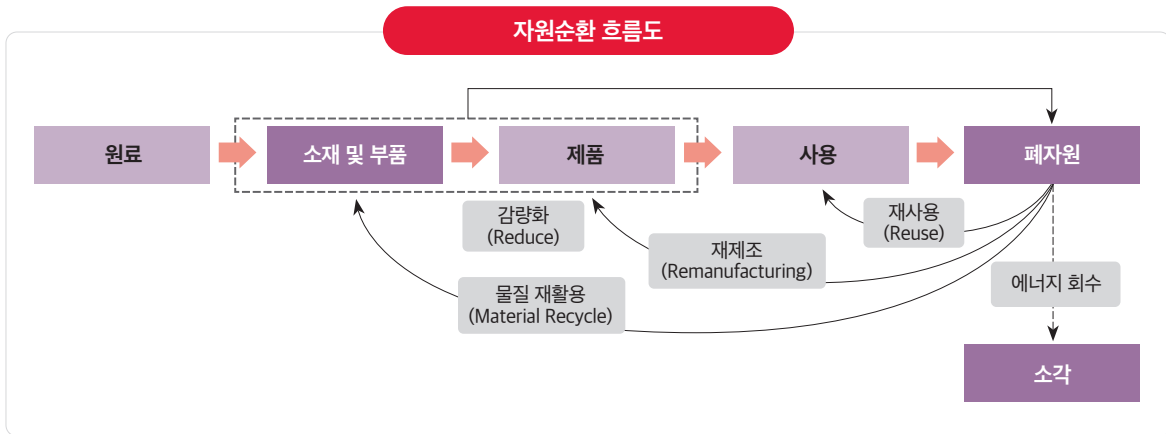
환경오염 저감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낮은 생산방식을 선택하여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

환경오염은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유발되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자연계 영향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나 생산기술보다 환경비용을 덜 요구하는 생산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환경적 편익을 만들어낸다. 본 성과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인 성과로, 개별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량에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은 해당 오염물질이 실제로 야기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비용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각각의 피해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방비용* 성격의 Eco-cost를 오염물질의 환경비용으로 활용한다. (*예방비용: 해당 오염물질의 발생을 적정수준까지 예방하기 위한 비용)

환경비용을 실제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Netherlands의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개발한 Eco-cost DB를 활용하여 환경오염 저감성과를 측정한다.

재사용 re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후 제품의 재사용을 위한 간단한 조치(단순 청소 및 정비)만을 한 후 잔존 수명만큼 같은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예: 헌옷을 수거하여 세탁한 후 중고가게에서 판매)
재제조 remanufactu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후 제품을 회수, 분해해 잔존 가치가 존재하는 부품에 대해 세척, 검수, 조정,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동일) 제품을 만드는 것(예: 사용한 카트리지를 분해하여 일부 부품을 교체한 후 새로운 토너를 채워서 만든 카트리지)
재활용 recyc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후 제품/부품을 수거하여 분해, 용융, 파쇄 등 물리적 가공을 거쳐 원재료화 한 후 새로운 제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예: 폐가죽 시트를 수거하여 가공을 통해 가방으로 제작)
친환경 대체재료 및 재생가능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재생 물질/에너지를 재생가능 물질/에너지로 대체하거나,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 (예: 기존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대나무를 사용한 대나무 빨대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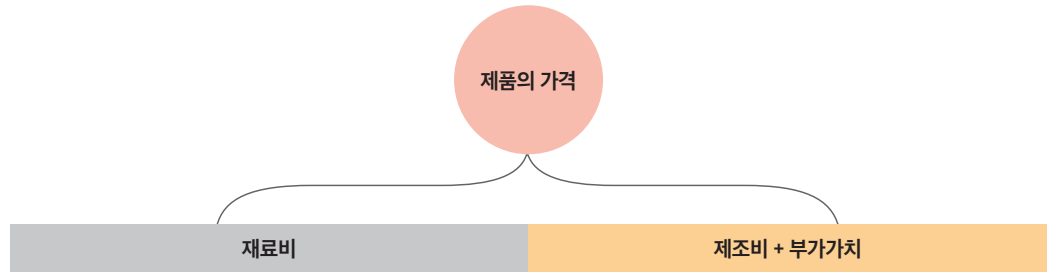
<그림 2-15> 자원순환 흐름에 따른 환경성과

1. 재사용

환경	재사용
지표개요	재사용을 통해 신규 제품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소비량을 줄이고, 신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
측정산식	<p>1-1. 재사용 자원소비 절감성과</p> <p>(1) 측정원리 신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될 유한한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성과로, 개별 자원의 소비를 줄인 양에 해당 자원의 가치를 적용하여 측정함. 자원의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모든 재료에 대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료비 비율을 적용함</p> <p>(2) 측정산식 소비되지 않는 재료의 가격 × 중고제품의 잔존가치비율 = (신제품 평균가격 × 해당 제품의 재료비 비율) × $\frac{\text{중고제품 거래가격}}{\text{신제품 가격}}$ = 해당 제품의 재료비 비율 × 중고제품 거래가격</p> <p>1-2. 재사용 환경오염 저감성과</p> <p>(1) 측정원리 신규재료(자원)의 생산 및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p> <p>(2) 측정산식 중고제품 재료의 Eco-cost × 중고제품의 잔존가치비율 = 중고제품 재료의 Eco-cost × $\frac{\text{중고제품 거래가격}}{\text{신제품 가격}}$</p>
주요개념 및 범주	<p>(1) 재사용: 사용 후 제품을 간단하게 청소하거나 정비하는 조치만을 행한 후 제품의 잔존 수명만큼 같은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 (ex.중고제품)</p>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LR A(((구)제품A)) -- 수집 --> B((분류/수선)) B -- 판매 --> C(((구)제품A)) </pre> </div> <p>(2) 유한자원: 비재생재료, 에너지, 용수 등</p> <p>(3) 잔존가치: 구매자가 제품을 소장하고 이용할 때의 가치</p>

1-1. 재사용 자원소비 절감성과

(1) 제품의 재료비 비율: 제품의 가격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생산원가율,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통계청)



<그림 2-16> 제품 가격의 구성

Proxy

Proxy1 = 소비되지 않는 재료의 가격
= 신제품 평균가격 × 해당 제품의 재료비 비율

(2) 중고제품의 잔존가치 비율: 중고제품은 신제품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제품을 대체하는 정도, 즉 중고제품에 남아있는 가치를 추정하고자 함. 이는 거래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잔존가치의 정도는 중고제품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보고, 잔존가치 비율은 신제품의 가격 대비 중고제품의 거래가격의 비로 산출함

Proxy2 = 중고제품의 잔존가치 비율 = $\frac{\text{중고제품의 거래 가격}}{\text{신제품 평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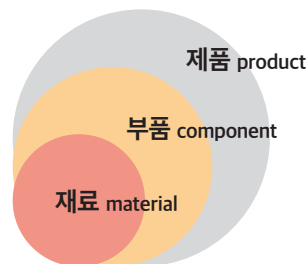
1-2. 재사용 환경오염 저감성과

(1) Eco-cost: 5천여 종의 물질, 프로세스, 에너지 관련 환경비용 활용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Eco-cost DB 활용)

중고제품에 대한 모든 재료의 Eco-cost 데이터가 없을 경우, 제품 1개를 구성하는 주재료를 중심으로 환경비용을 추정하여 측정. 본 DB에서는 재료(물질)의 경우, 무게 단위(kg)로 환경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여기업은 중고부품 재료의 무게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2) 중고제품의 잔존가치 비율: 중고제품 가격이 신제품 평균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타



<그림 2-17> 제품과 구성요소 개념의 이해

- 환경성과 측정지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의 구성단위를 왼쪽의 그림과 같이 제품의 구성을 구분함

- 제품은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가진 최종적인 생산물
- 부품은 제품을 구성, 제품의 작동을 위해 특정한 기능을 담당함
- 재료는 부품을 구성하는 물질이며, 그 자체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재료가 가지는 성질에 따라 부품이 기능을 갖게 됨

- 제품/부품/재료는 구성요소인지(하위), 구성요소의 결합물인지(상위)를 확인하기 위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함

2. 재제조

환경	재제조										
지표개요	<p>재제조를 통해 신규 부품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신규 부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p>										
측정산식	<p>2-1. 재제조 자원소비 절감성과</p> <p>(1) 측정원리 신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될 유한한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성과로, 개별 자원의 소비를 줄인 양에 해당 자원의 가치를 적용하여 측정함. 자원의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모든 재료에 대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료비 비율을 적용함</p> <p>(2) 측정산식 제품 재사용) 중고제품 거래가격 × 해당 제품의 재료비 비율(생산원가율) 부품 재사용) 중고부품 거래가격 × 해당 부품의 재료비 비율</p> <hr/> <p>2-2. 재제조 환경오염 저감성과</p> <p>(1) 측정원리 재제조 즉, 부품의 재사용을 통해 신규재료(자원)의 생산 및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p> <p>(2) 측정산식 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 × 재제조 제품의 잔존가치 비율</p> $= \text{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 \times \frac{\text{재제조 제품 거래가격}}{\text{신제품 평균가격}}$ <hr/>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환경오염 저감성과</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frac{\text{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text{Proxy1}}$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frac{\text{재제조 제품의 잔존가치 비율}}{\text{Proxy2}}$ </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frac{\text{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text{Proxy1}} \times \frac{\text{재제조 제품 거래가격}}{\text{신제품 평균가격}}$ </td> </tr> </table>	환경오염 저감성과	=	$\frac{\text{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text{Proxy1}}$	×	$\frac{\text{재제조 제품의 잔존가치 비율}}{\text{Proxy2}}$			=		$\frac{\text{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text{Proxy1}} \times \frac{\text{재제조 제품 거래가격}}{\text{신제품 평균가격}}$
환경오염 저감성과	=	$\frac{\text{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text{Proxy1}}$	×	$\frac{\text{재제조 제품의 잔존가치 비율}}{\text{Proxy2}}$							
		=		$\frac{\text{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text{Proxy1}} \times \frac{\text{재제조 제품 거래가격}}{\text{신제품 평균가격}}$							
주요개념 및 범주	<p>재제조: 사용한 제품을 회수해 체계적으로 분해, 세척, 검수, 조정,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동일 신규 제품으로 만드는 방식. 즉 제품을 분해한 후, 이 중 잔존가치가 있는 부품을 골라내어 신제품의 부품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말함</p>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LR A["(구)제품A"] -- 수집/회수 --> B["분해/세척"] B --> C["검수/조정"] C --> D["원부품화"] D -- 재조립 --> E["(신)제품A'"] F["신규 원부품"] --> D </pre> </div> <p><그림 2-18> 재제조의 개념</p>										

2-1. 재제조 자원소비 절감성과

$$\begin{aligned}
 \frac{\text{중고부품의 거래가격}}{\text{Proxy1}} &= \frac{\text{재제조 제품의 총 부품가격}}{\text{(D)}} \times \frac{\text{중고부품비의 비중}}{\text{(E)}} \\
 &= \frac{\text{재제조 제품의 가격}}{\text{(G)}} \times \frac{\text{해당 제품의 부품비 비중}}{\text{(F)}} \times \frac{\text{중고부품비의 비중}}{\text{(E)}}
 \end{aligned}$$

- (1) 중고부품 거래가격 = (G) 재제조 제품의 가격 × (F) 해당제품의 부품비 비중 × (E) 중고부품비 비중
 (G): 사회적기업이 판매하는 재제조 제품의 판매가격
 (F):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DB> 내 제조업 세부 항목의 부품비 비율
 (E): 전체 부품 구입 비용 중 중고 부품 확보(수거, 분해 및 검수) 비용의 비중
 (2) 해당 부품의 재료비 비율: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DB> 내 재료비 비율 데이터

Proxy

2-2. 재제조 환경오염 저감성과

- (1) Eco-cost: 5천여 종의 물질, 프로세스, 에너지 관련 환경비용 활용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Eco-cost DB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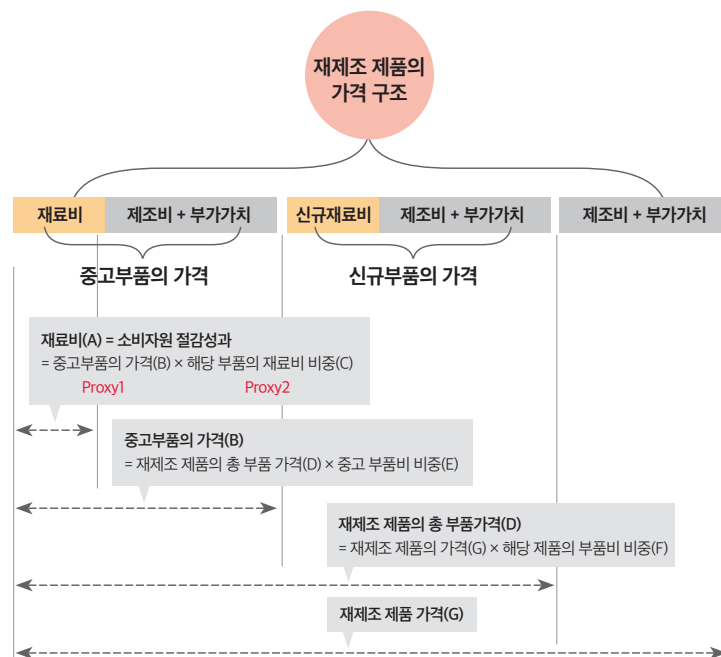
$$\text{중고부품 재료의 Eco-cost} = \text{해당 재료의 단위당 Eco-cost} \times \text{재료의 양(Kg)}$$

중고제품에 대한 모든 재료의 Eco-cost 데이터가 없을 경우, 제품 1개를 구성하는 주재료를 중심으로 환경비용을 추정하여 측정. 본 DB에서는 재료(물질)의 경우, 무게 단위(kg)로 환경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여기업은 중고부품 재료의 무게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2) 재제조 제품의 잔존가치 비율: 재제조 제품 가격이 신제품 평균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

$$\text{재제조 제품의 잔존가치 비율} = \frac{\text{재제조 제품 거래가격}}{\text{신제품 평균가격}}$$

참고



<그림 2-19> 재제조 제품의 가격 구조

3. 재활용

환경	재활용
지표개요	재활용을 통해 신규 자원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신규 자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
측정산식	<p>3-1. 재활용 자원소비 절감성과</p> <p>(1) A형(일부 과정) 폐제품/폐부품을 수거 및 가공하여 다른 제품의 재료 또는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 A형 자원소비 절감성과 = 중고재료 거래가격 × 해당 재료의 원재료비(광물) 비율</p> <p>(2) B형(전과정) 폐제품/폐부품을 수거부터 분리, 재료화 및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단일 기업이 모두 진행한 경우 B형 자원소비 절감성과 = 재활용 제품의 시장가격 × 해당 제품의 부품비 비중 × 재활용 부품비 비중 × 해당 부품의 재료비 비율</p> <p>(3) C형(친환경 프로세스) 타 기업이 만들어낸 재활용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친환경 프로세스 - 자원소비 절감성과로 측정</p> <p>3-2. 재활용 환경오염 저감성과</p> <p>(1) A형(일부 과정) 폐제품/폐부품의 수거 및 가공을 통해 재료 폐기 과정의 환경오염을 줄인 경우 A형 환경오염 저감성과 = 해당 재료의 일반 폐기방식 Eco-cost - 해당 재료의 재활용 방식 Eco-cost</p> <p>(2) B형(전과정) 신규 재료 사용 대비 재활용 재료 사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인 경우 B형 환경오염 저감성과 = 신제품 생산 시 Eco-cost - 재활용 제품 생산 시 Eco-cost</p> <p>(3) C형(친환경 프로세스) 타 기업이 만들어낸 재활용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친환경 프로세스 - 환경오염 저감성과로 측정</p>
주요개념 및 범주	<p>재활용: 폐제품이나 부품을 수거하여 활용하기 위해 분해, 용융, 파쇄 등 물리적 가공을 거친 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 본 성과에서는 재활용 과정 범위에 따라 프로세스 A형과 B형으로 구분하고 일부 과정(프로세스 A형, C형) 또는 전과정(프로세스 B형)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자원의 소비나 생산과정 내 환경오염을 줄이게 된 성과를 측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2-20> 재활용의 개념</p>
Proxy	<p>3-1. 재활용 자원소비 절감성과</p> <p>(1) A형(일부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 부품/재료 거래가격: 기업이 실제 판매한 중고 부품/재료의 거래가격 (단가 × 총 거래량) - 해당 부품의 재료비 비율/해당 재료의 원재료비(광물) 비율 (출처: 생산원가율,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통계청)

<p>Proxy</p>	<p>(2) B형(전과정) - 재활용 부품의 거래가격 = (A) 재활용 제품의 가격 × (B) 해당 제품의 부품비 비중 × (C)재활용 부품비의 비중 (A): 사회적기업이 판매하는 재활용 제품 판매가격 (B):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DB> 내 재료비 비율 데이터 (C): 모든 부품 확보 비용 중 재활용 부품 확보 비용 비중 - 해당 부품의 재료비 비율: 제품의 가격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생산원가율,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통계청)</p> <p>3-2. 재활용 환경오염 저감성과 (1) A형(일부 과정) - 해당 재료의 일반 폐기방식 Eco-cost: 재료의 폐기 과정(사용 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Eco-cost 사례) 사용 후 구리를 매립 또는 소각의 방식으로 폐기했을 때의 Eco-cost - 해당 재료의 재활용 방식 Eco-cost: 원재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Eco-cost (2) B형(전과정) - 신제품 생산 시 Eco-cost : 기존 신제품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Eco-cost 재활용 방식과 생산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재활용 재료를 통해 대체된 주 재료의 단위당 Eco-cost를 선택함 - 재활용제품 생산 시 Eco-cost: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Eco-cost 재활용 방식과 생산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사용된 주된 재활용 재료의 Eco-cost를 선택함 - Eco-cost: 5천여 종의 물질, 프로세스, 에너지 관련 환경비용 활용(Delft UnlVersity of Technology의 Eco-cost DB 활용)</p>
<p>참고</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2-21> 재활용 제품의 가격 구조</p>
<p>적용</p>	<p>재활용 프로세스 B형(전과정)에 속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성과 측정 가능</p> <p>3-1. 재활용 자원소비 절감성과(전과정) 3-2. 재활용 환경오염 저감성과(전과정) 3-3. 재활용 환경오염 저감성과(일부 과정)</p>

4. 친환경 대체재료

환경	친환경 대체재료											
지표개요	비재생물질, 에너지를 재생가능물질, 에너지로 대체하거나,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킨 성과											
측정산식	<p>4-1. 친환경 대체재료 자원소비 절감성과</p> <p>(1) 측정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재생물질 대신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하여, 비재생물질(유한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성과 - 여러 단위의 재생가능물질을 써야 하는 제품 대신 내구성이 높은 비재생물질 한 단위로 대체하여, 재생가능물질의 낭비를 줄이는 성과 <p>(2) 측정산식</p> <p>(기존 재료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서비스의 단위당 재료가격 - 사회적기업이 대체한 재료를 통한 제품/서비스의 단위당 자원가격) × 사회적기업의 총 제품/서비스 제공량</p>											
주요개념 및 범주	<p>4-2. 친환경 대체재료 환경오염 저감성과</p> <p>(1) 측정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재생물질 대신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하여, 비재생물질(유한자원)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 - 재생가능물질을 환경비용이 낮은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하여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 - 여러 단위의 재생가능물질을 써야 하는 제품 대신 내구성이 높은 비재생물질 한 단위로 대체하여, 환경오염의 총량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 <p>(2) 측정산식</p> <p>(일반시장이 이용하는 기존 재료 Eco-cost - 사회적기업의 대체재료 Eco-cost) × 사회적기업의 총 제품/서비스 제공량</p>											
주요개념 및 범주	<p><표 2-12> 비재생물질과 재생가능물질의 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개념</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정의</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물질/재료자원 Materials</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재생물질 (Nonrenewable materials)</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시일 내에 재생되지 않는 자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광물, 석유 및 그 추출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생가능물질 (renewable materials)</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태순환이나 농업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보충할 수 있는 방대한 자원으로부터 추출하는 물질</td> <td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td> </tr> </tbody> </table>	구분	개념	정의	예시	물질/재료자원 Materials	비재생물질 (Nonrenewable materials)	단시일 내에 재생되지 않는 자원	광물, 석유 및 그 추출물	재생가능물질 (renewable materials)	생태순환이나 농업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보충할 수 있는 방대한 자원으로부터 추출하는 물질	농산물
구분	개념	정의	예시									
물질/재료자원 Materials	비재생물질 (Nonrenewable materials)	단시일 내에 재생되지 않는 자원	광물, 석유 및 그 추출물									
	재생가능물질 (renewable materials)	생태순환이나 농업활동을 통해 단기간에 보충할 수 있는 방대한 자원으로부터 추출하는 물질	농산물									

<p>Proxy</p>	<p>4-1. 친환경 대체재료 자원소비 절감성과</p> <p>(1) 기존 재료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서비스의 단위당 재료 가격: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 기존 방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의 가격 (제품) 제품 1단위의 단가 × 해당 제품 유형의 재료비 비율 (서비스) 서비스 1단위에 투입되는 제품 개수 × 제품의 단가 × 해당 제품 유형의 재료비 비율</p> <p>(2) 사회적기업이 대체한 재료를 통한 제품/서비스의 단위당 재료 가격: 사회적기업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 대체하여 사용한 재료의 가격 (제품) 제품 1단위의 단가 × 해당 제품 유형의 재료비 비율 (서비스) 서비스 1단위에 투입되는 제품 개수 × 제품의 단가 × 해당 제품 유형의 재료비 비율</p> <p>(3) 사회적기업의 총 제품/서비스 제공량 측정연도에 제공한 제품/서비스의 총 제공량</p> <p>(4) 해당 부품의 재료비 비율/해당 재료의 원재료비(광물) 비율 (출처: 생산원가율, 광공업 및 제조업 산업통계, 통계청)</p> <hr/> <p>4-2. 친환경 대체재료 환경오염 저감성과</p> <p>(1) 일반 시장이 이용하는 기존 재료 Eco-cost: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동일/유사 기능을 갖는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일반 시장이 주로 사용하는 기존 재료(물질)의 Eco-cost</p> <p>(2) 사회적기업의 대체재료 Eco-cost: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재료(물질)의 Eco-cost</p> <p>(3) Eco-cost: 5천여 종의 물질, 프로세스, 에너지 관련 환경비용 활용(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Eco-cost DB 활용)</p>																														
<p>참고</p>	<p><표 2-13> 친환경 대체재료를 통한 환경성과 창출방식</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환경성과 창출방법 및 예시</th> <th>성과구분</th> <th>인정여부</th> <th>설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내구성이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1:1 대체)</td> <td rowspan="2">비재생 > 재생가능 (플라스틱 > 나무 탁자)*</td> <td>자원 절감</td> <td>○</td> <td>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희소성이 높은 비재생물질의 소비 절감</td> </tr> <tr> <td>오염 저감</td> <td>○</td> <td>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은 다르므로 환경오염 저감성과 인정</td> </tr> <tr> <td rowspan="2">재생가능 > 재생가능 (일반 면 > 옥수수면 의복)</td> <td>자원 절감</td> <td>×</td> <td>둘 다 재생가능한 물질로 소비자원 절감성과는 없음</td> </tr> <tr> <td>오염 저감</td> <td>○</td> <td>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은 다르므로 환경오염 저감성과 인정</td> </tr> <tr> <td rowspan="3">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품으로 (1:n 대체)</td> <td rowspan="2">비재생 > 재생가능 (플라스틱 컵 > 천 기저귀)*</td> <td>자원 절감</td> <td>○</td> <td>내구성이 높은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소비자원의 총량을 줄임</td> </tr> <tr> <td rowspan="2">오염 저감</td> <td rowspan="2">○</td> <td rowspan="2">소비자원의 총량이 줄면서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량도 줄임</td> </tr> <tr> <td>재생가능 > 비재생 (종이 > 플라스틱컵)*</td> </tr> <tr> <td>재생가능 > 재생가능</td> </tr> </tbody> </table> <p>* 본 표는 대체자원을 통한 환경성과 창출의 이해를 위해 구조화하여 설명한 것으로,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는 각 사례의 시장화 여부를 판단하며, 시장화 되었을 경우 사회성과 측정 대상에서 제외함(위 예시 중 플라스틱 탁자를 나무탁자로 교체한 경우나, 종이컵을 다회용 플라스틱컵으로 교체한 경우 등은 이미 시장화가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측정에서 제외함)</p>	구분	환경성과 창출방법 및 예시	성과구분	인정여부	설명	내구성이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1:1 대체)	비재생 > 재생가능 (플라스틱 > 나무 탁자)*	자원 절감	○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희소성이 높은 비재생물질의 소비 절감	오염 저감	○	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은 다르므로 환경오염 저감성과 인정	재생가능 > 재생가능 (일반 면 > 옥수수면 의복)	자원 절감	×	둘 다 재생가능한 물질로 소비자원 절감성과는 없음	오염 저감	○	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은 다르므로 환경오염 저감성과 인정	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품으로 (1:n 대체)	비재생 > 재생가능 (플라스틱 컵 > 천 기저귀)*	자원 절감	○	내구성이 높은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소비자원의 총량을 줄임	오염 저감	○	소비자원의 총량이 줄면서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량도 줄임	재생가능 > 비재생 (종이 > 플라스틱컵)*	재생가능 > 재생가능
구분	환경성과 창출방법 및 예시	성과구분	인정여부	설명																											
내구성이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1:1 대체)	비재생 > 재생가능 (플라스틱 > 나무 탁자)*	자원 절감	○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희소성이 높은 비재생물질의 소비 절감																											
		오염 저감	○	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은 다르므로 환경오염 저감성과 인정																											
	재생가능 > 재생가능 (일반 면 > 옥수수면 의복)	자원 절감	×	둘 다 재생가능한 물질로 소비자원 절감성과는 없음																											
		오염 저감	○	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은 다르므로 환경오염 저감성과 인정																											
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품으로 (1:n 대체)	비재생 > 재생가능 (플라스틱 컵 > 천 기저귀)*	자원 절감	○	내구성이 높은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소비자원의 총량을 줄임																											
		오염 저감	○	소비자원의 총량이 줄면서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량도 줄임																											
	재생가능 > 비재생 (종이 > 플라스틱컵)*																														
재생가능 > 재생가능																															

5. 친환경 프로세스

환경	친환경 프로세스								
지표개요	기존 생산방식보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프로세스를 선택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								
측정산식	<p>5-1. 친환경 프로세스 자원소비 절감성과</p> <p>(1) 측정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방식을 사용하여, 석유자원을 대체하고 유한한 에너지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성과를 측정함 - 공정프로세스 개선이나 혁신적 솔루션을 통해 이전에 비해 제품 생산에 쓰이는 재료나 에너지를 줄이는 성과를 측정함 <p>(2) 측정산식</p> <p>(기존 프로세스 에너지/재료의 단위당 에너지 자원의 가격 - 친환경 프로세스 에너지/재료의 단위당 에너지 자원의 가격) × 사회적기업의 총 에너지 제공량</p>								
측정산식	<p>5-2. 친환경 프로세스 환경오염 저감성과</p> <p>(1) 측정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재생물질 대신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하여, 비재생물질(유한자원)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 - 재생가능물질을 환경비용이 낮은 재생가능물질로 대체하여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 - 여러 단위의 재생가능물질을 써야하는 제품 대신 내구성이 높은 비재생물질 한 단위로 대체하여, 환경오염의 총량을 줄인 성과를 측정함 <p>(2) 측정산식</p> <p>(기존 프로세스 에너지/재료의 단위당 Eco cost - 친환경 프로세스 에너지/재료의 단위당 Eco-cost) × 사회적기업의 총 제품, 서비스 제공량</p>								
주요개념 및 범주	<p><표 2-14> 에너지원의 구분</p> <table border="1"> <thead> <tr> <th>에너지 자원 Energy sources</th> <th>비재생에너지원(Nonrenewable energy sources)</th> <th>생태순환을 통해 단기적으로 재보충, 재생산, 성장 또는 생성할 수 없는 에너지원</th> <th>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및 이를 처리/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연료</th> </tr> </thead> <tbody> <tr> <td></td> <td>재생가능물질 (Renewable energy sources)</td> <td>에너지 생성과정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고갈될 우려가 없는 에너지원</td> <td>태양열·태양광·바이오매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td> </tr> </tbody> </table>	에너지 자원 Energy sources	비재생에너지원(Nonrenewable energy sources)	생태순환을 통해 단기적으로 재보충, 재생산, 성장 또는 생성할 수 없는 에너지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및 이를 처리/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연료		재생가능물질 (Renewable energy sources)	에너지 생성과정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고갈될 우려가 없는 에너지원	태양열·태양광·바이오매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
에너지 자원 Energy sources	비재생에너지원(Nonrenewable energy sources)	생태순환을 통해 단기적으로 재보충, 재생산, 성장 또는 생성할 수 없는 에너지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및 이를 처리/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연료						
	재생가능물질 (Renewable energy sources)	에너지 생성과정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고갈될 우려가 없는 에너지원	태양열·태양광·바이오매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						
Proxy	<p>5-1. 친환경 프로세스 자원소비 절감성과</p> <p>(1) 기존 프로세스 에너지/재료의 단위당 에너지 자원의 가격</p> <p>(2) 친환경 프로세스 에너지/재료의 단위당 에너지 자원의 가격</p>								

<p>Proxy</p>	<p>5-2. 친환경 프로세스 환경오염 저감성과</p> <p>(1) 기존 프로세스 에너지/재료의 단위당 Eco-cost: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동일/유사 기능을 갖는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기존 방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재료의 Eco-cost</p> <p>(2) 친환경 프로세스 에너지/재료 단위당 Eco-cost: 사회적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물질의 Eco-cost</p> <p>(3) 탄소의 사회적비용(SCC: Social Cost of Carbon): 온실가스 1단위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미치는 피해비용을 산정함</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p>탄소의 사회적비용(SCC, Social Cost of Carb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톤의 탄소(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사회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비용 • 기후위기로 사회가 부담하는 손실 규모,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생산성, 재산 피해, 건강 영향 등 포함 • 국제적으로 규정된 계산법이나 기준은 없으며, 나라마다 상황에 맞춰 자의적으로 계산 </div> <p>(4) Eco-cost: 5천여 종의 물질, 프로세스, 에너지 관련 환경비용 활용(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Eco-cost DB 활용)</p>																		
<p>참고사항</p>	<p><표 2-15> 이산화탄소의 화폐적 가치 산정 방법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산정방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설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대표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적비용 (SCC: Social Cost of Carbon)</td> <td>온실가스 1단위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미치는 피해비용을 산정함</td> <td>SCC(미국연방정부/법원), TrueValue(KPMG), TIMM(PWC), True Cost</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계저감비용 (MAC: Marginal Abatement Cost)</td> <td>국가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단위당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추정함</td> <td>영국 정부(DECC)</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방비용(Prevention Cost)</td> <td>비용 효율적인 최선의 기술로 온실가스 한 단위를 저감하는 데 드는 비용</td> <td>Eco-cost DB(Delft Univ.)</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장가격제(Market Pricing)</td> <td>탄소의 가격화 정도: 배출권 거래가격 + 탄소세 + 화석연료 관련 세금</td> <td>광의(OECD의 ECR), 협의(탄소배출권 시장가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내부가격제(Internal Pricing)</td> <td>기업 자체적으로 다양한 가격을 사용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목시적가격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td> <td>전 세계 1,600여개 기업이 활용</td> </tr> </tbody> </table>	산정방식	설명	대표 기준	사회적비용 (SCC: Social Cost of Carbon)	온실가스 1단위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미치는 피해비용을 산정함	SCC(미국연방정부/법원), TrueValue(KPMG), TIMM(PWC), True Cost	한계저감비용 (MAC: Marginal Abatement Cost)	국가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단위당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추정함	영국 정부(DECC)	예방비용(Prevention Cost)	비용 효율적인 최선의 기술로 온실가스 한 단위를 저감하는 데 드는 비용	Eco-cost DB(Delft Univ.)	시장가격제(Market Pricing)	탄소의 가격화 정도: 배출권 거래가격 + 탄소세 + 화석연료 관련 세금	광의(OECD의 ECR), 협의(탄소배출권 시장가격)	내부가격제(Internal Pricing)	기업 자체적으로 다양한 가격을 사용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목시적가격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	전 세계 1,600여개 기업이 활용
산정방식	설명	대표 기준																	
사회적비용 (SCC: Social Cost of Carbon)	온실가스 1단위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미치는 피해비용을 산정함	SCC(미국연방정부/법원), TrueValue(KPMG), TIMM(PWC), True Cost																	
한계저감비용 (MAC: Marginal Abatement Cost)	국가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단위당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추정함	영국 정부(DECC)																	
예방비용(Prevention Cost)	비용 효율적인 최선의 기술로 온실가스 한 단위를 저감하는 데 드는 비용	Eco-cost DB(Delft Univ.)																	
시장가격제(Market Pricing)	탄소의 가격화 정도: 배출권 거래가격 + 탄소세 + 화석연료 관련 세금	광의(OECD의 ECR), 협의(탄소배출권 시장가격)																	
내부가격제(Internal Pricing)	기업 자체적으로 다양한 가격을 사용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목시적가격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	전 세계 1,600여개 기업이 활용																	

6. 생태계 복원력 강화

환경	생태계 복원력 강화																																																																																																																																																																															
지표개요	<p>식물 식재, 야생동물 보호, 생태공간 조성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복원력을 높인 성과</p>																																																																																																																																																																															
측정산식	<p>6-1. 나무 식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성과</p> <div style="background-color: #f5f5f5; padding: 10px;"> <p>(1) 측정원리 사회적기업이 자연환경을 위해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환경성고가 발생함.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산소로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나무 식재의 양과 식재한 나무의 수령 등에 따른 연간 탄소포집량을 토대로 사회성과를 측정함</p> <p>(2) 측정산식 측정년도에 새로 식재한 나무와 과거에 식재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무의 수령, 수종에 따른 연간 탄소포집량 × 수령, 수종별 나무 수 × 탄소배출권 가격</p> </div>																																																																																																																																																																															
	<p>6-2. 생태계 교란종 추출물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성과</p> <div style="background-color: #f5f5f5; padding: 10px;"> <p>(1) 측정원리 지구온난화로 인한 외래종의 증가 등 생태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환경 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태계 교란종의 증가를 억제하거나 개체 수 급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생태계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음. 산호초 지대를 파괴하고 양식업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태계 교란종인 불가사리의 번식 억제를 위해 정부는 매년 불가사리를 수매하여 소각함. 사회적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물질을 원료로 하는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해 판매함</p> <p>(2) 측정산식 (기존 처리 방식으로 발생하는 환경비용 - 사회적기업의 처리 방식으로 발생하는 환경비용) × 연간 소비량</p> </div>																																																																																																																																																																															
Proxy	<p>6-1. 나무 식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성과 탄소포집량: 국내 수종/수령에 따른 연구자료의 부재로, 수령과 수종에 따른 탄소포집량 데이터를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관리청에서 발행한 자료에 기반하여 DB 구축</p> <p><표 2-16> Survival Factors and Annual Carbon Sequestration Rates for Common Urban Trees</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Tree Age(yrs)</th> <th colspan="3" rowspan="2">Survival Factors by Growth Rate</th> <th colspan="6">Annual Sequestration Rates by Tree Type and Growth Rate (IBS. carbon/tree/year)</th> </tr> <tr> <th colspan="3">Hardwood</th> <th colspan="3">Conifer</th> </tr> <tr> <th>Slow</th> <th>Moderate</th> <th>Fast</th> <th>Slow</th> <th>Moderate</th> <th>Fast</th> <th>Slow</th> <th>Moderate</th> <th>Fast</th> </tr> </thead> <tbody> <tr><td>0</td><td>0.873</td><td>0.873</td><td>0.873</td><td>1.3</td><td>1.9</td><td>2.7</td><td>0.7</td><td>1.0</td><td>1.4</td></tr> <tr><td>1</td><td>0.798</td><td>0.798</td><td>0.798</td><td>1.6</td><td>2.7</td><td>4.0</td><td>0.9</td><td>1.5</td><td>2.2</td></tr> <tr><td>2</td><td>0.736</td><td>0.736</td><td>0.736</td><td>2.0</td><td>3.5</td><td>5.4</td><td>1.1</td><td>2.0</td><td>3.1</td></tr> <tr><td>3</td><td>0.706</td><td>0.706</td><td>0.706</td><td>2.4</td><td>4.3</td><td>6.9</td><td>1.4</td><td>2.5</td><td>4.1</td></tr> <tr><td>4</td><td>0.678</td><td>0.678</td><td>0.678</td><td>2.8</td><td>5.2</td><td>8.5</td><td>1.6</td><td>3.1</td><td>5.2</td></tr> <tr><td>5</td><td>0.658</td><td>0.658</td><td>0.658</td><td>3.2</td><td>6.1</td><td>10.1</td><td>1.9</td><td>3.7</td><td>6.4</td></tr> <tr><td>6</td><td>0.639</td><td>0.639</td><td>0.644</td><td>3.7</td><td>7.1</td><td>11.8</td><td>2.2</td><td>4.4</td><td>7.6</td></tr> <tr><td>7</td><td>0.621</td><td>0.621</td><td>0.630</td><td>4.1</td><td>8.1</td><td>13.6</td><td>2.5</td><td>5.1</td><td>8.9</td></tr> <tr><td>8</td><td>0.603</td><td>0.603</td><td>0.616</td><td>4.6</td><td>9.1</td><td>15.5</td><td>2.8</td><td>5.8</td><td>10.2</td></tr> <tr><td>9</td><td>0.585</td><td>0.589</td><td>0.602</td><td>5.0</td><td>10.2</td><td>17.4</td><td>3.1</td><td>6.6</td><td>11.7</td></tr> <tr><td>10</td><td>0.568</td><td>0.576</td><td>0.589</td><td>5.5</td><td>11.2</td><td>19.3</td><td>3.5</td><td>7.4</td><td>13.2</td></tr> <tr><td>11</td><td>0.552</td><td>0.564</td><td>0.576</td><td>6.0</td><td>12.3</td><td>21.3</td><td>3.8</td><td>8.2</td><td>14.7</td></tr> <tr><td>12</td><td>0.536</td><td>0.551</td><td>0.563</td><td>6.5</td><td>13.5</td><td>23.3</td><td>4.2</td><td>9.1</td><td>16.3</td></tr> <tr><td>13</td><td>0.524</td><td>0.539</td><td>0.551</td><td>7.0</td><td>14.6</td><td>25.4</td><td>4.6</td><td>9.9</td><td>17.9</td></tr> <tr><td>14</td><td>0.512</td><td>0.527</td><td>0.539</td><td>7.5</td><td>15.8</td><td>27.5</td><td>4.9</td><td>10.8</td><td>19.6</td></tr> </tbody> </table>	Tree Age(yrs)	Survival Factors by Growth Rate			Annual Sequestration Rates by Tree Type and Growth Rate (IBS. carbon/tree/year)						Hardwood			Conifer			Slow	Moderate	Fast	Slow	Moderate	Fast	Slow	Moderate	Fast	0	0.873	0.873	0.873	1.3	1.9	2.7	0.7	1.0	1.4	1	0.798	0.798	0.798	1.6	2.7	4.0	0.9	1.5	2.2	2	0.736	0.736	0.736	2.0	3.5	5.4	1.1	2.0	3.1	3	0.706	0.706	0.706	2.4	4.3	6.9	1.4	2.5	4.1	4	0.678	0.678	0.678	2.8	5.2	8.5	1.6	3.1	5.2	5	0.658	0.658	0.658	3.2	6.1	10.1	1.9	3.7	6.4	6	0.639	0.639	0.644	3.7	7.1	11.8	2.2	4.4	7.6	7	0.621	0.621	0.630	4.1	8.1	13.6	2.5	5.1	8.9	8	0.603	0.603	0.616	4.6	9.1	15.5	2.8	5.8	10.2	9	0.585	0.589	0.602	5.0	10.2	17.4	3.1	6.6	11.7	10	0.568	0.576	0.589	5.5	11.2	19.3	3.5	7.4	13.2	11	0.552	0.564	0.576	6.0	12.3	21.3	3.8	8.2	14.7	12	0.536	0.551	0.563	6.5	13.5	23.3	4.2	9.1	16.3	13	0.524	0.539	0.551	7.0	14.6	25.4	4.6	9.9	17.9	14	0.512	0.527	0.539	7.5	15.8	27.5	4.9	10.8	19.6
Tree Age(yrs)	Survival Factors by Growth Rate					Annual Sequestration Rates by Tree Type and Growth Rate (IBS. carbon/tree/year)																																																																																																																																																																										
				Hardwood			Conifer																																																																																																																																																																									
	Slow	Moderate	Fast	Slow	Moderate	Fast	Slow	Moderate	Fast																																																																																																																																																																							
0	0.873	0.873	0.873	1.3	1.9	2.7	0.7	1.0	1.4																																																																																																																																																																							
1	0.798	0.798	0.798	1.6	2.7	4.0	0.9	1.5	2.2																																																																																																																																																																							
2	0.736	0.736	0.736	2.0	3.5	5.4	1.1	2.0	3.1																																																																																																																																																																							
3	0.706	0.706	0.706	2.4	4.3	6.9	1.4	2.5	4.1																																																																																																																																																																							
4	0.678	0.678	0.678	2.8	5.2	8.5	1.6	3.1	5.2																																																																																																																																																																							
5	0.658	0.658	0.658	3.2	6.1	10.1	1.9	3.7	6.4																																																																																																																																																																							
6	0.639	0.639	0.644	3.7	7.1	11.8	2.2	4.4	7.6																																																																																																																																																																							
7	0.621	0.621	0.630	4.1	8.1	13.6	2.5	5.1	8.9																																																																																																																																																																							
8	0.603	0.603	0.616	4.6	9.1	15.5	2.8	5.8	10.2																																																																																																																																																																							
9	0.585	0.589	0.602	5.0	10.2	17.4	3.1	6.6	11.7																																																																																																																																																																							
10	0.568	0.576	0.589	5.5	11.2	19.3	3.5	7.4	13.2																																																																																																																																																																							
11	0.552	0.564	0.576	6.0	12.3	21.3	3.8	8.2	14.7																																																																																																																																																																							
12	0.536	0.551	0.563	6.5	13.5	23.3	4.2	9.1	16.3																																																																																																																																																																							
13	0.524	0.539	0.551	7.0	14.6	25.4	4.6	9.9	17.9																																																																																																																																																																							
14	0.512	0.527	0.539	7.5	15.8	27.5	4.9	10.8	19.6																																																																																																																																																																							

Proxy	<표 2-17> 나무 한 그루 당 연간 CO₂ 흡수량(kgCO₂/그루/년)													
		입령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강원지방소나무	1.4*	3.2	5.0	6.7	8.1	8.8	9.0	9.2	9.2	9.0	8.6	8.1	7.6
	충부지방소나무	1.0*	2.2*	3.9	9.8	9.1	7.9	6.6	4.9	4.0	3.2	2.6	2.2	1.8
	잣나무	1.6*	5.2	8.6	11.6	12.5	13.6	14.1	14.2	14.0	13.7	13.3	12.8	12.3
	낙엽송	4.3*	4.7	9.2	11.5	13.6	15.0	15.8	16.2	16.1	15.8	15.6	15.5	15.3
	리기다소나무	0.9*	3.6	6.8	9.2	10.6	11.1	9.9	9.3	8.6	7.9	7.3	6.7	6.4
	편백	2.5*	4.2	5.1	5.7	5.9	5.9	5.8	5.7	5.2	5.0	4.6	4.3	4.2
	상수리나무	6.2*	9.4*	13.5	14.6	14.1	14.5	14.9	15.2	15.5	15.8	15.9	16.1	16.3
	신갈나무	1.2*	2.6*	5.6	6.4	6.7	8.1	8.8	9.7	10.7	11.8	12.3	12.8	13.1
		* 임분수확표에 없는 자료로 추정치를 적용한 값임 ** 임분수확표의 임분단위 자료를 본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수령(개체목) 기준의 흡수량을 제시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2019.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ver.1.2). NIFoS 산림정책이슈 14쪽.												
	6-2. 생태계 교란종 추출물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성과 (1) 기존 처리 방식으로 발생하는 Eco-cost: 사회적기업이 처리한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Eco-cost (2) 사회적기업의 처리 방식으로 발생하는 Eco-cost: 사회적기업이 생태계 교란종을 추출하거나 처리할 때 발생하는 Eco-cost Eco-cost: 5천여 종의 물질, 프로세스, 에너지 관련 환경비용 활용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Eco-cost DB 활용)													
주요개념 및 범주	생태계 복원력(Ecological resilience): 생태학에서 복원성(Resilience)은 자연 환경 및 생태계에서 오염이나 작은 변화가 나타났을 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IPCC 6차 평가 보고서는 복원력을 "필수 기능, 정체성 및 구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변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https://academic-accelerator.com/encyclopedia/kr/ecological-resilience) ex) 탄소포집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숲 조성을 통해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는 것, 야생동물 보호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적용	나무 식재를 통해 생태계 복원력을 강화하는 성과는 그 결과가 장기적이고 누적적으로 나타남. 나무를 한번 심어 놓으면, 나무가 죽거나 뽑히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나무를 식재한 시점부터 나무를 소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동안은 사회성과가 계속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부록

별첨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2023년)

별첨2. Proxy DB 출처

별첨 1. 성과별 증빙자료 가이드라인(2023년)

1. 제품/서비스성과

1) 제품/서비스성과 증빙자료 목록

(1) 제품/서비스성과 증빙자료 목록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기업의 미션	필수	정관	• 정관의 명시된 '목적'과 '업종'이 기업의 사회적 사명과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측정
할인/무료 제공에 대한 사실	필수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 기관에게 제공한 경우: 기관장 직인, 제공인원(수혜자 중 취약계층 인원), 제공일시, 세부내역 기입 • 개인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 서명, 제공일시, 세부내역 기입 및 수혜자 취약계층 증명 서류	• 취약계층으로 100% 구성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는 개별 취약계층 증빙 불필요. 다만 일반기관(학교, 복지관 등)은 취약계층 인원 및 개별 취약계층 증빙자료를 제출
기부내역에 대한 사실	필수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 외에 기부(내역)확인서, 기부증서 제출 가능
시장가격 증명 자료	필수	• 서비스/제품 단가표(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 (판매하는 제품/서비스가 아닌 경우) 유사제품/서비스 가격 증빙자료	• 자사 가격 확인가능한 자료 •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서비스 단가표 필요 • 유사한 시장의 제품/서비스 가격 증명 자료를 토대로 기준가격은 측정기관과 논의 후 결정 • 의료비급여 시장가격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비급여진료비 정보'에서 업체가 속한 지역의 해당 진료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함. *링크: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HIRA 비급여진료비 정보
기타	선택	•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예,매출현황, 입출금내역, 계약서 등)	• 교육서비스 제공-출석부, 활동일지 등(해외의 경우, 출석부 등으로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대체 가능)
제품/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추가 생산요소 투입사실에 대한 증빙	필수	• 추가인력 고용 증명 자료(급여대장 등) • 추가재료 투입에 대한 증명 자료 (제조원가율 정보 등)	• 정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 통제 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

2. 내부공정성과

1) 내부공정성과 증빙자료 목록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기업의 미션	필수	정관	• 정관상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의미의 문구가 소설미션으로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측정
근로자 임금지급내역	필수	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로형)	• 1개 파일당 3장 전체 제출 • 글자가 인식되는 원본 PDF파일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고용안정성	선택	산재보험가입증명원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산재보험만 가입한 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로형)상의 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 여부로 같음함
경과성일자리 관련	필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안, 결과보고서 등	• 이직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외부지원금	필수	근로자별 연계 국가지원사업 관련 자료 일체	• 취업성공패키지 등 사업의 공문, 사업명, 주최기관, 자격요건, 신청서 작성본, 수급내역 등
	필수	관련 자료 일체	• 고용 관련 외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청년고용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급통지서 및 산출내역서 등

2) 취약계층 유형별 증빙자료 목록

취약유형	정의	제출서류	비고
[제1호] 일반저소득자 :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택1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자료 일체	• 공문, 사업명, 주최기관, 자격요건, 신청서 작성본, 수급내역
		수급자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에서 발급 • 주소 가려서 제출
		차상위계층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에서 발급 • 주소 가려서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에서 발급 • 국내 월평균 근로소득 60% 이하로 저소득자 여부 판단 • 주소,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건강보험납부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유선 요청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제2호] 고령자 : 만 55세 이상인 자	택1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가려서 제출
		복지카드	• 주민센터(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사진,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가려서 제출
		상이군경회원증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지회에서 발급 • 사진,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가려서 제출
		장애진단서(전문의를)	• 의료기관 문의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가려서 제출

<p>[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p>	택1	성매매피해자동의서	• 주소,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입소사유 가려서 제출
		보호처분결정문	• 결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외 내용 가려서 제출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기관, 연락처, 가해자,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1366 상담기록 or 입소확인증	• 기관, 연락처, 가해자,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의료급여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부양가족 내용 가려서 제출
<p>[제5호]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 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p>	택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발급 (www.ei.go.kr)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청년장기실업자/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원사업/교육프로그램 이수증	
		청년취업아카데미 이수증	
새일센터 프로그램 신청서			
<p>[제6호]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p>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에서 발급
<p>[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p>	택1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보호비용변경신청서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가려서 제출
		보호처분결정문	• 결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외 내용 가려서 제출
		범죄피해자 결정통지문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연락처, 가해자정보,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상담시설 상담확인증	• 연락처, 가해자정보,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가려서 제출
<p>[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 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p>	해당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소 가려서 제출
<p>[제9호]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p>	택1	혼인관계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귀화한 경우 3년 이내만 인정
		F-6 비자	• 사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p>[제10호] 갱생보호대상자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p>	<p>해당자</p>	<p>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p>	
<p>[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p>	<p>택1</p>	<p>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보호비용변경신청서 보호처분결정문 범죄피해자 결정통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가려서 제출 • 결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외 내용 가려서 제출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p>[제12호] 기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 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p>	<p>해당자</p>	<p>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p>[제12호] 기타- 수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해당자</p>	<p>수용증명서, 출소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도소·구치소의 민원실 방문 혹은 • 법무부 형사사법포탈(www.kics.go.kr)에서 본인인증 확인 후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칭호번호 가려서 제출
<p>[제12호] 기타- 소년원생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p>	<p>해당자</p>	<p>소년퇴원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 방문 혹은 정부24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퇴원사유 가려서 제출
<p>[제12호] 기타- 보호관찰 청소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p>	<p>해당자</p>	<p>보호관찰기관 발급 증명서</p>	
<p>[제12호] 기타- 노숙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p>	<p>택1</p>	<p>시설확인증 자활근로자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 고용보험사이트 발급 (www.ei.go.kr)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세대주 성명 가려서 제출
<p>[제12호] 기타-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p>	<p>택1</p>	<p>지원프로그램 신청서 진단서 관계기관 사실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중독자 치료병원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전화번호, 소견, 질병분류기호 가려서 제출

[제12호] 기타- 선천성 또는 후천성 질환 치료자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택1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가입자,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 주소, 진단명, 상병기호 가려서 제출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제12호] 기타- 여성가장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택1	가족관계등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통반장확인서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 확정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등 																																	
[제12호] 기타- 난민 :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해당자	난민인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심사 거점기관 문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전국 난민심사 거점기관]</th> </tr> <tr> <th>난민신청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th> <th>난민심사 거점기관</th> <th>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서울, 서울남부, 김포공항, 수원, 양주, 대전, 청주, 춘천 (출장소) 세종로, 도심공항, 서울역, 고양, 평택, 평택항, 천안, 서산, 당진, 동해, 속초, 고성</td> <td>→ 서울출입국·외국인청</td> <td>02-2650-6399</td> </tr> <tr> <td>인천 (출장소) 안산</td> <td>→ 인천출입국·외국인청</td> <td>032-890-6300</td> </tr> <tr> <td>부산, 김해공항, 울산, 창원 (출장소) 김천, 김해, 통영, 사천, 거제</td> <td>→ 부산출입국·외국인청</td> <td>051-461-3091</td> </tr> <tr> <td>대구 (출장소) 구미, 포항</td> <td>→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td> <td>053-980-3505</td> </tr> <tr> <td>광주, 전주 (출장소) 목포, 무안, 군산</td> <td>→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td> <td>062-605-5207</td> </tr> <tr> <td>제주</td> <td>→ 제주출입국·외국인청</td> <td>064-723-3494</td> </tr> <tr> <td>여수 (출장소) 광양</td> <td>→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td> <td>061-792-1139</td> </tr> <tr> <td>화성외국인보호소</td> <td>→ 화성외국인보호소</td> <td>031-8055-7000</td> </tr> <tr> <td>청주외국인보호소</td> <td>→ 청주외국인보호소</td> <td>043-740-7512</td> </tr> </tbody> </table>	[전국 난민심사 거점기관]			난민신청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난민심사 거점기관	연락처	서울, 서울남부, 김포공항, 수원, 양주, 대전, 청주, 춘천 (출장소) 세종로, 도심공항, 서울역, 고양, 평택, 평택항, 천안, 서산, 당진, 동해, 속초, 고성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02-2650-6399	인천 (출장소) 안산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032-890-6300	부산, 김해공항, 울산, 창원 (출장소) 김천, 김해, 통영, 사천, 거제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051-461-3091	대구 (출장소) 구미, 포항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3-980-3505	광주, 전주 (출장소) 목포, 무안, 군산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2-605-5207	제주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064-723-3494	여수 (출장소) 광양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1-792-1139	화성외국인보호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031-8055-7000	청주외국인보호소	→ 청주외국인보호소	043-740-7512
[전국 난민심사 거점기관]																																				
난민신청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난민심사 거점기관	연락처																																		
서울, 서울남부, 김포공항, 수원, 양주, 대전, 청주, 춘천 (출장소) 세종로, 도심공항, 서울역, 고양, 평택, 평택항, 천안, 서산, 당진, 동해, 속초, 고성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02-2650-6399																																		
인천 (출장소) 안산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032-890-6300																																		
부산, 김해공항, 울산, 창원 (출장소) 김천, 김해, 통영, 사천, 거제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051-461-3091																																		
대구 (출장소) 구미, 포항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3-980-3505																																		
광주, 전주 (출장소) 목포, 무안, 군산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2-605-5207																																		
제주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064-723-3494																																		
여수 (출장소) 광양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1-792-1139																																		
화성외국인보호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031-8055-7000																																		
청주외국인보호소	→ 청주외국인보호소	043-740-7512																																		
[제12호] 기타- 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택1	보호종료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에서 발급 •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인적사항 가려서 제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대리인정보 가려서 제출 																																	
[제12호] 기타-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청소년	해당자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퇴소사유 가려서 제출 																																	
[제12호] 기타- 조손가정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만 18세 이하 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	택1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 주민센터, 법원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가려서 제출 																																	
		주민센터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에서 발급 																																	
		관계기관 확인서																																		
[제12호] 기타-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해당자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 등																																		

[제12호] 기타-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 저신용자: 신용등급 7~10등급	해당자	신용등급조회서류	
[제12호] 기타- 학교폭력 피해자	택1	해당기관 확인서	
		관계기관 상담신청서	
		조치결정통보서	• 소속 학교, 조치원인, 담당자 가려서 제출
[제12호] 기타- 가정 밖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택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보호비용변경신청서	•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주소, 피해내용 가려서 제출
		범죄피해자 결정통지문	• 결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외 내용 가려서 제출
		관계기관 확인서	
[제12호] 기타-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택1	대상 프로그램 상담, 지원 신청서	
		관계기관 확인서	
[제12호] 기타- 중증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중증질환자	택1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가입자,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 주소, 진단명, 상병기호 가려서 제출
		관계기관 확인서	

3. 외부공정성과

1) 소농거래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거래대상의 소농 증명 자료	필수	• 농가소득자료, 거래 농가 정보	• 소농기준, 경작면적(2ha미만) 및 연소득(3천만원 이하) 기준 • 증빙이 어려운 경우, 국내 농가 중 소농비율 적용
거래 내역 및 거래액 증빙자료	필수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영수증 등	

2~3) 공정무역 - 농산물, 비농산물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거래내역 증빙자료	필수	• 연간 전체 거래 내역 • 해외거래서류(인보이스, 수입신고필증, 해외송금확인증 등)	
거래처 취약성 증명 자료	필요시		• 대상: 공정무역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저개발국가 또는 세계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 10원칙에 기반해 거래하는 저개발국가의 취약한 농업생산자/영세소상공인

4) 공정여행 - 해외, 국내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거래내역 증빙자료	필수	• 연간 전체 거래 내역 • 관련 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거래처 취약성 증명 자료	필요시		• (해외) 대상지역: 저개발국- World Bank 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중하위권 이하 그룹(Low 또는 Lower-middle income Group) * 참고: https://data.worldbank.org/?locations=XN-XM • (국내) 지역의 경제 현황 및 관광실태의 취약성을 검토하여 인정함 측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필요

*공정여행 사례-제주생태관광/공감만세

5) 크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크라우드펀딩 증빙자료	필수	• 크라우드펀딩 리스트 및 모금액, 펀딩수수료 비율, 외부지원금(참여기업별 정산서 및 계산서 등)	• 측정기관의 '공익성 검토 기준' 판단에 따라 프로젝트별 성과 인정여부 달라질 수 있음

6)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대상자 적합성 및 관계성을 증명하는 자료	필수	• 창업 지원 사업 내용, 신규 조직 형성 기여활동 자료 등
창업 조직 증명 자료	필수	• 재무제표 및 고용 현황 자료 등

7)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거래내역 증빙자료	필수	• 연간 거래 내역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거래처 취약성 증명 자료	필요시	•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8) 문화예술 자산보호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신진예술인 여부	필수	• 신진예술인예술활동증명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 2년)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006/cs01006_05.jsp)
문화예술 관련 거래 내역 증빙자료	필수	• 지급내역, 이체확인증, 판매확인서 등	• 신진예술가에 대한 기준에 따라 성과인정여부 달라질 수 있음(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예술활동증명' 및 소득인정액 제출 필요)

9) 비영리조직 지원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기부처와의 연관성 및 소셜 미션에 부합하는 기부임을 증명하는 자료	필수	• 정관, 업무협약서 등	• 정관 및 BM(비즈니스모델) 연관성 확인 필요
기부내역 증빙자료	필수	• 연간 기부 내역 • 기부금 영수증 등	

10)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사례별 측정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를 측정기관과 사전 논의 후 제출

11)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사례별 측정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를 측정기관과 사전 논의 후 제출

4. 환경성과

증빙사항	제출	제출서류	비고
기업의 미션	필수	정관	• 정관상 '환경', '건강', '지역사회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과 사회를 위해 힘쓰는 의미의 문구가 소설미션 또는 사업범위로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측정
제품의 효과성	권장	연구논문, 시험성적서, 자체 실험data 등	• 더 정확한 지표 측정 위함 • 기준정보 부재시 필수로 요구할 수 있음
제품의 거래내역	필수	세금계산서	• 실제 거래내역 통해 환경성과 측정
해외수출입 내역	해당자	수입신고필증 해외수출실적증명	• 해외로 거래 시 제출
구독서비스/ 온라인 등 이용률	해당자	시스템 출력값(엑셀)	• 엑셀파일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나, 증빙방법이 그 이상으로 존재하지 않을 시, 최대한 구체적, 일관적으로 출력/작성된 파일만 제한적 인정

별첨 2. Proxy DB 출처

성과영역	세부영역	프록시명	출처
제품/서비스	할인/무료 제공	전체 취약계층 비율	통계청, 소득분배지표(2021)
	할인/무료 제공	노인빈곤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할인/무료 제공	아동빈곤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2020)
내부공정	직접고용 경과성 일자리	취약계층 평균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직접고용 경과성 일자리	사회적기업 평균 임금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성과분석(2020)
	중증 돌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경기복지재단, 202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조사
외부공정	소농거래	농업 유통비 비율	KAMIS, 농산물 유통정보 3개년 평균 데이터 활용
	공정무역 공정여행	공정무역/무역국가 및 부가가치율	World Bank, Country and Lending Groups UN Data Rev.3 176 Nations
	문화예술 자산보호	문화예술 부가가치율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환경	자원소비 절감 전체	재료비 비율(생산원가율)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환경오염 저감 전체	Eco-cost	Delft University, Eco-cost DB
	친환경 프로세스	전기세	전력데이터 개방포털
	생태계 복원력 강화	나무 이산화탄소 흡수 가치	Method for Calculating Carbon Sequestration by Trees in Urban and Suburban Settings - U.S. Department of Energy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98)
	친환경 프로세스 생태계 복원력 강화	SCC (Social Cost of Carbon)	PWC
공통		업종별 부가가치율	국세청, 국세통계
		연 평균환율(매매기준율)	하나은행 연평균 기준 매매기준율(최초)
		물가상승률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임금상승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기획

권순범 SPC팀장 겸 책임연구원 (sbkwon@cses.re.kr)

김소예 연구원 (sy0219@cses.re.kr)

이한결 연구원

저자

김소예 연구원 (sy0219@cses.re.kr)

이한결 연구원

김지현 선임연구원 (jhkim@cses.re.kr)

김보영 선임연구원 (daisykim@cses.re.kr)

고현창 연구원 (sunnysoc.imp@cses.re.kr)

여미영 책임연구원 (myyeo@cses.re.kr)

정종덕 책임연구원 (jung@cses.re.kr)

박혜수 선임연구원 (phsphs08@cses.re.kr)

박정은 선임연구원 (jepark@cses.re.kr)

김성은 선임연구원 (kse@cses.re.kr)

권순범 SPC팀장 겸 책임연구원 (sbkwon@cses.re.kr)

디자인·출판

내일날씨

발행

초판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 측정』 라준영, 김수진, 박성훈 2016년 9월

제1개정판 『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성과 측정 매뉴얼』 라준영, 김수진, 정소민, 박성훈 2017년 11월

제2개정판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매뉴얼』 2024년 2월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매뉴얼 요약편 개요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매뉴얼 요약편은 사회적가치연구원이 변화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측정 기준과 체계를 제시하고자 고민했던 노력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 개정판이 사회성과 측정과 확산의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MPRINT

발행처 사회적가치연구원

발행일 2024년 2월

발행인 나석권

CONTACT INFORMATION

주소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8층

Tel 02-6275-0410

Fax 070-5176-4269

E-mail info@cses.re.kr

홈페이지 <https://www.cses.re.kr/>

CSES | 사회적 가치 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